

월간

재정포럼

2023. March
Vol.321

03



권두칼럼

중기 국방재정 정책을
위한 제언
| 백재욱

현안분석

탄소감축 노력의 국제적 규범화와
탄소가격 체계
| 배진수

근로장려세제(EITC)가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 고지현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바이든 대통령,
억만장자에 대한 최저한세 부과
및 기업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금 4배 인상 제안

Kipf

재정포럼

2023.03 Vol.321

월간 재정포럼 2023년 3월호 통권 제321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044) 414-2132 홈페이지 www.kipf.re.kr

CONTENTS

권두칼럼

- 02 중기 국방재정 정책을 위한 제언 | 백재욱

현안분석

- 08 탄소감축 노력의 국제적 규범화와 탄소가격 체계 | 배진수
34 근로장려세제(EITC)가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 고지현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58 미국 - 바이든 대통령, 억만장자에 대한 최저한세 부과 및 기업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금 4배 인상 제안 외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포럼』은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기 국방재정 정책을 위한 제언



백재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우리 군은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뿐 아니라 실질 경제성장률 하락과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건전재정 기조로 인한 국방예산 증가율의 둔화, 병역자원 감소,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과 핵심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 부각이라는 국방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국방재정은 국방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재원을 말한다. 한국 국방재정은 국방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 기금(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으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국방예산에 초점을 맞춘다.

2023년 국방예산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반영된 첫 번째 예산이다. 새 정부는 재정 기조를 기존의 확장적 재정 운용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있다. 2018~2022년 기간 연평균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8.7%이고, 동 기간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은 6.3%이다. 2023년 국방예산에는 국정과제와 건전재정 기조가 투영되어 있다. 2023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57조 143억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8.9%를 차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2.5%로 추정된다.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5.1%보다 0.7%p 낮다. 이처럼 향후 국방예산 증가율은 예전에 비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4%이다.

중기 국방예산의 주요 비용동인

국방예산의 비용동인(cost driver)은 비용 투입의 인과관계를 보여준다. 2010~2022년 기간 비용

동인은 2010년 대비 2022년 국방예산 증분 비중과 프로그램별 증가율로 식별될 수 있다. 국방예산의 주요 비용동인은 ① 국방인력 구조 개편(간부 및 군무원 증원 등) ② 장병복지 증진(병사 봉급, 의식주, 군 의료 등) ③ 현존 전력 극대화(적정 장비가동률 확보,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 등) ④ 핵심전력 증강(한국형 3축 체계,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전력구조 개편 등) ⑤ 첨단 국방과학기술 확보 및 방위산업 육성이다.

2010~2022년 기간 국방예산에서 ①, ④, ⑤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었고 ②와 ③에 차순위가 부여되었다. 2006년부터 추진한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구조 개편, 한국형 3축 체계 추진, 국방기술개발 집중 투자에 따른 결과이다. 그리고 장병복지 증진과 장비가동률 확보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입하였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2023년 국방예산, 국방부 「2023~2027 국방중기계획», 기획재정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주요 비용동인을 식별하면 다음과 같다. 2023년 국방예산은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②, ⑤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③, ④에도 적절하게 편성하였다. 단 ④에서 한국형 3축 체계 추진은 최우선 순위이다. 이 같은 기조는 중기간 지속된다.

중기 주요 비용동인에 대한 정책 제언

국방재정의 귀일점은 강력한 국방력 건설과 유지이다. 이들 비용동인에 대한 국방정책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인력 구조 개편은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였다. 상비병력 중 간부가 차지하는 비율을 2022년 40.1%에서 2027년까지 40.5%로 증가시키고, 비전투 분야에 민간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2030년대 중후반 이후 병력자원 급감에 따라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둘째, 장병복지 증진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기에도 지속할 것이다. 주요 사업은 의식주(기본급식비 인상,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개선 등) 및 의료체계 개선, 비전투 분야 업무의 민간 아웃소싱 확대, 2025년까지 병사 봉급 인상(병장 기준 월 150만원)과 연계하여 내일준비적금 최대 지원규모를 월 55만원(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까지

2023년 국방예산은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장병복지 증진과 첨단 국방과학기술 확보 및 방위산업 육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 같은 기조는 중기간 지속된다.

국방전략과 국방재정을
연계시켜 비용동인 간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군사력 건설과
유지 효과를 최적화하는
전략주도적인
국방재정 정책이
긴요하다.

확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등이다. 중기에 장병복지 비용은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복지 목표 수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다만 초급간부의 처우개선은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초급간부의 수당·보수 증액, 숙소 개선뿐 아니라 병역문화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초급간부 확보는 병역자원 급감에 대한 핵심 대책이다. 이는 앞으로 지원병제 확대와 맞물려 있다.


셋째, 현존전력 극대화는 적정 장비가동률을 보장하고, 과학화 훈련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위한 실전적 과학화 훈련장을 갖추고,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예비전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 중 최우선 순위는 적정 장비가동률을 보장하는 것이다. 첨단 무기체계의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장비유지비는 증가할 것이다.

넷째, 「국방혁신 4.0」과 국정과제에서 밝힌 북·핵 미사일 및 수도권 위협 장사정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여 실질적인 대응 및 억제 능력을 구비하는 것은 핵심 과제이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ISR) 능력을 갖추고, 또한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단계별 전환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방혁신 4.0」의 내실화(과제선정, 소요예산, 세부추진 계획 등)를 통해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한 군 정찰위성 개발 및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이 확충되고,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무인기·무인수색차량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발전하여 임계점을 넘어서고 전력화될수록 이에 대비한 핵심전력 증강은 필수적이고, 그 투입비용도 대폭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중요도를 국방 분야에서 설정하고, 도입·적용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과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국방운영뿐 아니라 전력증강체계에 접목하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서 추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국산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무기체계 획득예산 중 국내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는 핵심기술뿐 아니라 첨단무기 개발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군 전력증강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다.

전략주도적인 자원 배분과 분석평가 기능 강화

국방전략과 국방재정을 연계시켜 비용동인 간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군사력 건설과 유지 효과를 최적화하는 전략주도적(strategy-driven)인 국방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군은 첨단 무기체계의 도입과 이에 따른 운영유지비 증가, 핵심기술개발 투자 확대, 간부 비율 제고 및 민간인력 증원, 장병 복지 소요 증가라는 고비용 구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비용동인을 식별·분석해서 이들 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효율과 절약을 반드시 추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위력 개선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력 운영 분야의 분석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현재 사전타당성 검토 과제 위주에서 국방중기계획 작성 간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단계에서의 분석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전력 운영과 방위력 개선 간 연계를 위한 분석평가 체계도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력 운영 분야 분석평가는 데이터에 기반(data-driven)하는 구조여야 한다. 

방위력 개선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력 운영 분야의 분석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전력 운영 분야 분석평가는 데이터에 기반하는 구조여야 한다.



현안분석

+ 탄소감축 노력의 국제적 규범화와 탄소가격 체계

배진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근로장려세제(EITC)가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고지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01

탄소감축 노력의 국제적 규범화와 탄소가격 체계



배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jsbae@kipf.re.kr

1. 서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감축 노력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성공적인 탄소감축은 국가 간의 공조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서 국제사회는 지난 30년 동안 탄소감축 협력을 논의해 왔으나 기후변화 대응에 충분한 탄소감축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최근 탄소감축 노력을 위한 국가 간의 공조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탄소감축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한 공감대와 합의를 바탕으로 ‘국제규범화’ 되어간다고 말하고 있다(윤순진, 2021).¹⁾ 다만 국제규범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에 대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지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고에서는 탄소감축의 국제규범화가 의미하는 바를 게임이론을 비롯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2018년에 기후변화의 경제적 모형 구축 및 대응에 관한 공헌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William D. Nordhaus 및 다수의 경제학자 관점에서 보면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규범화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Nordhaus, 2015; 2019; Cramton et al., 2017; Cooper, 2017; Weitzman, 2017). 첫 번

1) 이러한 견해는 탄소감축 노력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도 유사하다. 산업통상자원부(2021), p. 2, “탄소중립의 국제무역 규범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021), “탄소중립은 이제 우리 사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가야 할 움직일 수 없는 목표이자 규범이 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2022), “탄소중립의 국제무역 규범화에 따라 탄소장벽은 계속 확대 될 전망”

째는 다자간 협상이 아닌 Top-down 방식의 질서 확립이며, 두 번째는 국가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와 같은 수량접근법이 아닌 국제 단일 탄소가격(Global Uniform Carbon Price)과 같은 가격접근법의 확립이다. 이러한 관점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EU의 탄소국경 조정, G7의 기후 클럽 창설 노력, 국제기구들의 탄소가격 도입 권고 등을 잘 설명한다.

이어서 이러한 변화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선 최근 발생한 에너지 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은 유류세를 인하는 등 탄소가격부과에 대해 일시적인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탄소감축 노력의 국제규범화라는 추세를 되돌릴 수 있을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또한 국제적인 탄소감축 노력에 따라 탄소가격을 부과하게 될 경우 국내 경제주체들이 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일반적 국민의 인식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탄소감축의 국제규범화가 의미하는 바를 게임이론을 비롯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II. 탄소감축 노력의 국제적 규범화의 역사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자간 협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감축 논의는 지난 30년간 이루어져 왔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²⁾에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³⁾을 채택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1990년에 발표한 「제1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The First Assessment Report)」에서, 인간의 활동은 온실가스의 집중을 상당히 증가시켰으며,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발생을 즉각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합의의 바탕이 되었다(IPCC, 1990). 유엔기후변화협약은 모든 당사국이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를 제출해야 한다는 일반의무와, OECD 회원국 및 일부 국가들이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특별의무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강제성 없는 느슨한 합의였다(윤순진, 2021; 산업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02).

이후 1997년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2)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3)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1992. 5. 9.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참여하기로 한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COP)에서 교토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협약당사국이 자발적으로 비준해야 하는 발효조건을 가지고 있었기에 2005년에서야 발효되었다.⁴⁾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인 부속서 1 국가들이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 동안 1990년도 배출량 대비 평균 5.2%를 감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각국별 감축목표는 유럽연합 15개 회원국 8%, 미국 7%, 일본 6% 등 다양하게 결정되었다(산업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02). 교통의정서는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에 대해 다자간의 협정을 통해 공동의 규약을 마련하여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미국이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고 캐나다가 탈퇴하였으며, 제2차 교토의정서 의무 감축기간(2013~2020년)에는 러시아, 일본, 뉴질랜드가 불참을 선언하여 사실상 교토의정서 체제는 실효성을 상실하였다(환경부, 2022).⁵⁾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참여하기로 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C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인 장기목표하에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전 지구적 차원의 탄소감축 목표에 동참하도록 한 것에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윤순진, 2021). 하지만 파리협정은 감축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결정하도록 하여 강제성이 없으며,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하였다가 재가입하기도 하는 등 그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일부 학자들은 파리협정은 개발도상국도 함께 탄소감축 목표에 동참하자는 열망(Aspiration)의 표현이지, 이것이 실질적인 탄소감축 노력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Cramton et al, 2017; Cléménçon, 2016).

2. 다자간 협약에서 국제적 규범으로(탄소국경 조정, 기후클럽)

교토의정서가 실효성을 상실하고 파리협정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

4) 발효조건은 협약당사국 55개 이상 비준, 비준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는 1990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이었다(환경부, 2022; 산업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02).

5) 2007년 제13차 당사국총회(COP13, 발리)에서는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의 종료에 대비하여, 교토의정서에 불참한 선진국과 개도국까지 참여하는 Post-2012 체제를 2009년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 코펜하겐)에서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감축목표나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같은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간극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코펜하겐에서 Post-2012 체제의 출범은 좌초되고 말았다(외교부 누리집).

기되는 것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다자간 협약을 통한 기후문제 해결은 무임승차의 유인으로 인해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Nordhaus, 2015; 2019; Cramton et al., 2017).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소감축 노력에 관한 국제적 규범화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들은 교토의정서나 파리협정과 같은 다자간 협약과는 다른 특징들을 가진다. 첫 번째는 다자간 협약에 기초한 탄소감축 노력이 아니라 EU나 G7과 같은 선진국 주도의 Top-down 형태의 탄소감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존의 교토의정서나 파리협정에서는 탄소감축량을 목표로 제시하는 수량접근법을 위주로 논의를 하였다면 최근 논의는 탄소가격을 중심으로 한 가격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Top-down 방식의 탄소감축 논의에 대해서 살펴보자. EU는 2019년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서 탄소국경 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제안하면서, 수입품 가운데 EU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일종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였다.⁶⁾ 미국은 탄소국경 조정으로 인한 무역 손실을 우려하면서도, 탄소감축 노력의 국가적 공조를 위해 탄소국경 조정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탄소국경 조정과 유사한 오염 수입 요금(Polluter import fee) 등을 법제화하는 것도 고려한 바 있다.

한편 G7 회원국은 2022년 6월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독일이 제안한 '기후클럽'을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매일경제, 2023). 기후클럽은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William D. Nordhaus가 제안한 개념으로, 회원국들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적 단일 가격을 설정하고, 국내 탄소가격을 이와 상응하는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및 탄소감축 기술 지원 등의 조치를 통해 기후클럽에 가입하도록 유인을 제공한다.

국제기구들 또한 탄소감축을 위한 규범들을 제시하고 있다. IMF는 국제 탄소가격 하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Parry et al, 2021; Chateau et al, 2022), BIS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금융 부문의 역할에 주목하며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의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Bolton et al., 2020).⁷⁾

이러한 Top-down 방식의 국제적 규범화는 참여 국가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필요한 기존의 다자간 협약 방식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단적으로 중국 정부는 EU의 탄소국경 조정제도가 WTO 협정을 위반하고, 양자

다자간 협약의 대안으로 진행되는 국제적 규범화는 선진국 주도의 Top-down 형태로 탄소감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탄소가격을 중심으로 한 가격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6) 탄소국경 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보고서(박누리, 2023)를 참고할 수 있다.

7) 이 외에도 BIS 웹사이트의 Research & publications - Trending topics - Climate change & green finance에서 관련 연구를 찾을 수 있다.

파리협정이 체결된
2015년까지 상당수의
유럽 국가들이
탄소세를 도입하였고
최근까지 도입국가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국가들의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간 신뢰 및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라며 비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U는 탄소국경 조정제도를 2023년 시범 도입하고 2026년부터 본격 도입하겠다는 계획에 잠정 합의하였다(박누리, 2023).

한편 이러한 Top-down 형태의 탄소감축 노력은 교토의정서나 파리협정에서 고려된 것과 같이 탄소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을 통제하는 가격접근법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EU의 탄소국경 조정, IMF가 제시하는 국제 탄소가격 하한, 기후클럽이 제시하는 국제 단일 탄소가격 모두 가격에 대해서 규범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불확실성이 없는 하나의 경제 내에서 탄소배출에 대한 수량규제와 가격규제는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여러 국가경제들이 공조하는 국제적 관점에서는 수량접근법과 가격접근법이 많은 차이점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Cramton et al, 2017; Nordhaus, 2019). 이러한 연구들은 EU 탄소국경 조정과 G7의 기후클럽이 수량접근법보다는 가격접근법을 선호하는 이유를 잘 설명한다.⁸⁾

한편 개별 국가 내에서도 탄소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최근 들어 많아지고 있다. <표 1>은 탄소세 도입국가의 도입시기 및 세율을 보여주고 있고, [그림 1]은 탄소세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국가의 지도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탄소세는 1990년대 초 핀란드, 폴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에서 도입했으나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국제적 차원에서는 탄소세보다 배출권 거래제도의 수량통제 관점에서 탄소감축 노력이 논의되었다. 2003년 EU 회원국들은 범국가적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도인 EU-ETS를 발표하였고, 2005년 25개 회원국이 참여하며 시작되었다. EU-ETS 시행 이후 2010년까지 탄소세를 도입한 회원국은 없었으나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는 등의 과정을 겪으며 배출권 거래제도의 실질적인 탄소배출 감축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상당수의 유럽 국가들이 탄소세를 도입하였고, 최근까지도 탄소세 도입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⁹⁾ 반면 배출권 거래제도의 경우 2005년 EU-ETS 도입 이후 중국, 캐나다 등이 도입하였으나 도입국가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8)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제 III장에서 하도록 하겠다.
9) 2019년에는 3,500명 이상의 미국 경제학자들이 탄소세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가장 비용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성명서를 내기도 하였다(Climature Leadership Council,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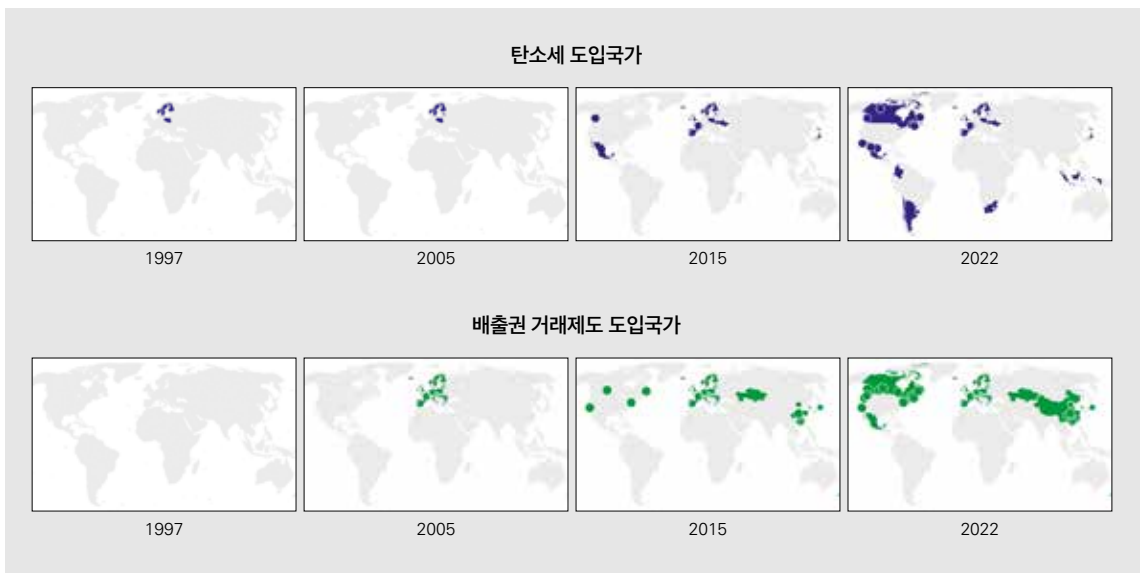
<표 1> 국가별 탄소세 도입시기 및 세율

(단위: USD/tCO₂e)

국가	연도	세율(2021. 1. 기준)	국가	연도	세율(2021. 1. 기준)
핀란드	1990 (최초 도입)	수송연료: 72.8 이외 화석연료: 62.3	영국	2013	25
폴란드	1990	0.08	프랑스	2014	52
노르웨이	1991	상류: 69, 하류: 4	스페인	2014	18
스웨덴	1991	137(매년 재산징)	멕시코	2014	상류: 3, 하류: 0.4
덴마크	1992	화석연료: 28, 불화가스: 24 (매년 재산징)	포르투갈	2015	28(매년 재산징)
슬로베니아	1996	20	칠레	2017	5
에스토니아	2000	2	콜롬비아	2017	5
라트비아	2004	14	아르헨티나	2018	6(분기별 재산징)
스위스	2008	101	캐나다	2019	32
리히텐슈타인	2008	101	싱가포르	2019	4
아이슬란드	2010	불화가스: 20, 화석연료: 35	남아프리카공화국	2019	9
아일랜드	2010	39	룩셈부르크	2021	경유: 40, 휘발유: 38 나머지 화석연료: 23
우크라이나	2011	0.3	네덜란드	2021	35
일본	2012	3	우루과이	2022	137

출처: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 이동규(2022); 배진수 외(202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1]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국가



출처: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Nordhaus(2015)는 다자간의 협약을 통한 Bottom-up 방식으로는 탄소감축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기후클럽을 기초로 하는 Top-down 방식으로 국가 간의 공조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III. 게임이론을 바탕으로 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본 장에서는 탄소감축 노력의 국제적 규범화의 특징인 Top-down 방식의 규범화와 가격접근법에 대한 선호를 게임이론을 사용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소개해 보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201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William D. Nordhaus의 연구 및 최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1. 다자간 협약의 한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감축은 기본적으로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유지의 비극과 같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개별 국가나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을 한다면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Nordhaus(2015)는 이러한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간의 협약을 통한 Bottom-up 방식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기후클럽을 기초로 하는 Top-down 방식으로 국가 간의 공조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형은 다음과 같다. W_i 는 국가의 후생, Q_i 는 산출물, A_i 는 탄소감축 비용, D_i 는 탄소배출로 인한 피해라고 가정한다. E 는 실제 배출량, \bar{E} 는 규제가 없을 경우 배출량, $\mu = (\bar{E} - E)/\bar{E}$ 는 탄소감축 비율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γ 는 탄소배출의 사회적 한계비용, θ_i 는 i 국가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탄소감축 비용은 탄소감축 비율의 이차함수라고 가정한다($A_i = \alpha\mu_i^2 Q_i = \alpha\mu_i^2 \theta_i Q_w$, α 는 감축비용 모수이며, Q_w 는 세계 전체의 산출물). 이 경우 국가의 i 후생은 다음과 같다.

$$W_i = Q_i - A_i - D_i = \theta_i Q_w - \alpha\mu_i^2 \theta_i Q_w - \gamma\theta_i (E_i + \sum_{j \neq i} E_j) \quad \text{식 (1)}$$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일회게임(One-shot game)의 최적의 감축률을 구하면 비협조게임의 균형에서 결정되는 감축률(μ_i^{NC})과 탄소가격(τ_i^{NC})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mu_i^{NC} &= \theta_i [\gamma\sigma/2\alpha] \\ \tau_i^{NC} &= \theta_i \gamma \end{aligned} \quad \text{식 (2)}$$

이는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최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협력적인 감축비용 ($\gamma\sigma/2\alpha$)과 탄소가격(γ)에 크게 못 미치는데, 이는 개별 국가가 탄소배출이 타 국가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배출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전래정리(folk theorem)에 의하면 이러한 게임이 반복되는 경우 협력적인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Nordhaus(2015)는 이러한 반복 게임을 통해 협력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복게임을 통한 협력균형의 달성은 비협조적인 행태를 취하는 플레이어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하겠다는 약속(commitment)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한 번이라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모두가 영원히 협조하지 않는 촉발 전략(grim strategy)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모두에게 손해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영구적인 처벌을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다시 잘해보자고 협상을 하게 되는 유인이 생긴다. 이를 가리켜 재협상방지(renegotiation proofness)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며, Nordhaus(2015)는 재협상의 유인 때문에 반복게임을 통한 다자간 협상으로는 탄소감축에 이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교토의정서나 파리협정을 탈퇴한 국가들이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Nordhaus(2015)는 탄소감축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인 유인체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일회게임에서의 균형으로서 협력적인 균형이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협조 국가들에 대한 제재(Sanction)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제재를 취하는 것이 자국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재협상의 여지없이 실제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인합치성(incentive compatibility)이 성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기후클럽 구성에 관해 제시하였다. 기후클럽에 가입한 이들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탄소가격을 자국에 부과하며, 비참여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제재를 취하게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이러한 기후클럽을 구성하면 낮은 관세율을 통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기후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었다(Nordhaus, 2015, p. 1358).

이러한 기후클럽의 경우 관세라는 외적인 제재를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비참여국은 참여국의 관세 제재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가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기후클럽 불참에 대한 불이익으로 무역제재를 하는 경우 국가 간 무역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보호무역

기후클럽에 가입한 이들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탄소가격을 자국에 부과하며, 비참여국에 대해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제재를 취하게 된다. 다만 비참여국은 참여국의 관세 제재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가정을 사용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탄소가격 체계에서
가격접근법과 수량접근법 중
무엇을 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최근의 연구는
무임승차 극복을 위한
국가 간 공조를 위해서는
가격접근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논의가 제시되고 있다.

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교토의정서나 파리협정과 같은 다자간 협약의 실질적 구속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후클럽과 같은 Top-down 형태의 탄소감축 규범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가격접근법에 대한 선호

다수의 학자는 탄소배출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가격 체계가 탄소저감 기술 개발 유인을 제공하고 비용-효율적으로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한다(Goulder and Schein, 2013). 하지만 탄소가격 체계 중에서도 국제 단일 탄소가격과 같은 가격접근법을 택할 것인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같은 수량접근법을 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다. 각각의 제도는 고유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¹⁰⁾ 최근 연구는 무임승차 극복을 위한 국가 간 공조를 위해서는 가격접근법을 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논의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학자는 Weitzman 교수(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이며, 이 외에도 여러 학자가 관련된 논의를 제기하였다(Cramton et al., 2017; Gollier and Tirole, 2017; Cooper, 2017). 본 절에서는 Weitzman(2014; 2017)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격접근법이 왜 무임승차를 극복하기 유리한 메커니즘인지 간략하게 논의해보고자 한다.

Weitzman(2014; 2017)은 경제주체들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실질적 협상에 유리한 탄소가격 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포컬 포인트(focal point)가 존재하여 적은 거래비용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협상과정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무임승차 유인을 상쇄시켜줄 기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가격을 협상하는 것은 하나의 숫자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IMF 같은 국제기구들이 이산화탄소 배출 1톤당 50달러의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할 때, 이러한 가격들은 협상과정에서 포컬 포인트로 작용하여 국가들의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량접근법을 통해서 이러한 포컬 포인트를 지목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탄소배출량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지불하는 가격에 비해 인지적으로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다. 두 번째, 예를 들어 모든 국가가 탄소배

10) 이와 관련해서는 Goulder and Schein(2013), 강만욱(2014)을 참고

출 40% 감축이라는 어떤 숫자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언제를 기준으로 감축인 것인지 등이 모호하며, 국가별로 발전단계나 탄소배출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구속력 있는 협상의 시작이 어렵다는 것이다.

포괄 포인트의 존재 유무보다 더욱 큰 차이점은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임승차할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기제가 작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우선 국가들이 국제 탄소가격에 대해서 협상을 시도한다고 하자. 개별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낮은 국제 탄소가격을 원할 것이지만, 낮은 가격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많은 탄소배출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자국에 피해를 줄 것이므로 적정 수준의 가격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될 유인이 있다. 하지만 탄소배출량에 대한 협상은 이와 같이 무임승차 유인을 줄일 수 있는 기제가 적절하게 작용하기 어렵다. 만일 국가들이 모여서 전 세계의 전체 탄소배출량을 협상하고자 하면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가능한 적은 수준의 배출량을 정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국가별로 나누어 가지는 데서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모든 국가들은, 정해진 전체 한도 중에서, 자국이 많은 배출량을 할당받고 다른 국가들은 적은 배출량을 할당받기를 원하게 된다. 결국 개별 국가들이 원하는 자국의 배출량을 합하게 되면 처음 결정했던 전체 배출량을 초과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될 뿐이라는 것이다(Weitzman, 2017; Nordhaus, 2019).

한편 Gollier and Tirole(2017)의 경우 시점 간(inter-temporal)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 문제에서도 가격접근법과 수량접근법은 다르게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머지않은 미래에 탄소배출 감축량에 대한 협상이 타결된다고 가정했을 때, 각국은 일단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배출량을 늘려둬야 감축량의 협상에서 유리할 것이다. Gollier and Tirole(2017)은 이를 가리켜 'Waiting Game'이라고 지칭하였는데 가격의 협상에서는 이러한 Waiting Game이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하였다.

Cramton et al.(2017)은 수량접근법이 가격접근법에 비해 국가의 부패에 취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수량접근법의 경우 국가가 개별 기업의 배출량을 축소 보고하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배출 감축의무도 충당시킬 수 있어 이러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가격접근법의 경우에는 국가가 기업의 배출량을 묵과한다고 해서 얻는 이득이 없으며, 오

국제 탄소가격 협상 시
개별 국가는
낮은 가격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많은 탄소배출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자국에 피해를 줄 것이므로
적정 수준의 가격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될
유인이 있다.

수량접근법보다
 가격접근법을 통한
 국가 간 공조가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국가 간 협상에서
 가격을 협상의 매개체로
 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지,
 개별 국가 내에서
 탄소세와 같은
 특정 가격체계 사용을
 권고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표 2> 국제적 공조 관점에서 가격접근법과 수량접근법의 차이

가격접근법	수량접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컬 포인트의 존재 무임승차 유인의 억제 기제 작용 Waiting game이 발생할 유인이 적음 개별 기업의 허위 축소보고를 국가에서 통제할 유인이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컬 포인트의 부존재 협상의 결렬 요인이 존재 Waiting game이 발생할 유인이 있음 개별 기업의 허위 축소보고를 국가에서 용인할 유인이 존재

출처: 저자 작성

히려 국가의 정부 수입이 감소하므로 부패의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최근의 연구들이 왜 수량접근법보다 가격접근법을 통해서 국가 간 공조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이러한 논의는 국가 간 협상의 상황에서 가격을 협상의 매개체로 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지, 개별 국가 내에서 탄소세와 같은 특정 가격체계를 쓰라고 권고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다.¹¹⁾ 개별 국가 내에서는 탄소세를 사용하든, 탄소배출권을 사용하든 국가 간 협의한 탄소가격을 달성할 수 있다면 수단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탄소감축 노력의 국제적 규범화는 개별 국가의 탄소감축량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가격의 준수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IV. 국내 탄소가격 체계에 대한 시사점

본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적 환경에서 탄소가격 체계를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에너지 위기로 인한 탄소감축 노력 후퇴 우려에 대한 평가

최근 코로나19로부터의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각국은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것이 유류세 인하이다. 한국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유류세를 법정세율보다 낮게 적용하고 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11) 다만 개별 국가 내에서도 탄소세의 적용이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보다는 행정적 비용 및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측면에서는 수월할 수 있다 (Weitzman, 2017).

<표 3>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현황

(단위: 원/리터, %)

구분	취발유	법정세율 대비	9. 5. 대비	경유	법정세율 대비	9. 5. 대비
법정세율	475	-	-	340	-	-
2009. 5. 21. ~ 2018. 11. 5.	529	+11.4	0	375	+10.3	0
2018. 11. 6. ~ 2019. 5. 6.	450	-5.3	-15	319	-6.2	-15
2019. 5. 7. ~ 2019. 8. 31.	492	+3.6	-7	349	+2.6	-7
2019. 9. 1. ~ 2021. 11. 11.	529	+11.4	0	375	+10.3	0
2021. 11. 12. ~ 2022. 4. 30.	423	-10.9	-20	300	-11.8	-20
2022. 5. 1. ~ 2022. 6. 30. ¹⁾	370	-22.1	-30	263	-22.6	-30
2022. 7. 1. ~ 2022. 12. 31.	332.5	-30	-37.1	238	-30	-36.5
2023. 1. 1. ~	396.7	-16.4	-25	238	-30	-36.5

주: 1) 시행령 개정은 2022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나(3개월 적용) 2022년 6월 30일에 시행령을 다시 개정함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만 적용되었다.

출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의 개정으로 탄력세율을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탄소감축의 노력이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대체로 석탄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견해에 기초한다.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차단하여 에너지 위기에 봉착한 유럽 각국이 석탄화력 발전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이병윤, 2022), 그리고 ESG 경영을 강조하면서 발전용 석탄 등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종료하겠다고 선언하였던 블랙록이 화석연료 관련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전기신문』, 2022).

하지만 앞서 논의한 탄소감축 노력의 국제적 규범화의 특징에 의하면 이러한 변화는 탄소감축 노력의 후퇴가 진행된다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첫째, 국제적으로 탄소가격이 장기적으로 낮아지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 각국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 정책 등을 취하고 있기는 하나, 탄소가격 부과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탄소세를 인상할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¹²⁾ 또한 에너지 관련 기업 초과이윤세를 통한 복지재원 확보,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친환경 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으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두 번째, EU의 탄소국경 조정과 같은 Top-down 형태의 국제적 규범화가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각국은 그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유류세를 법정세율보다 낮게 적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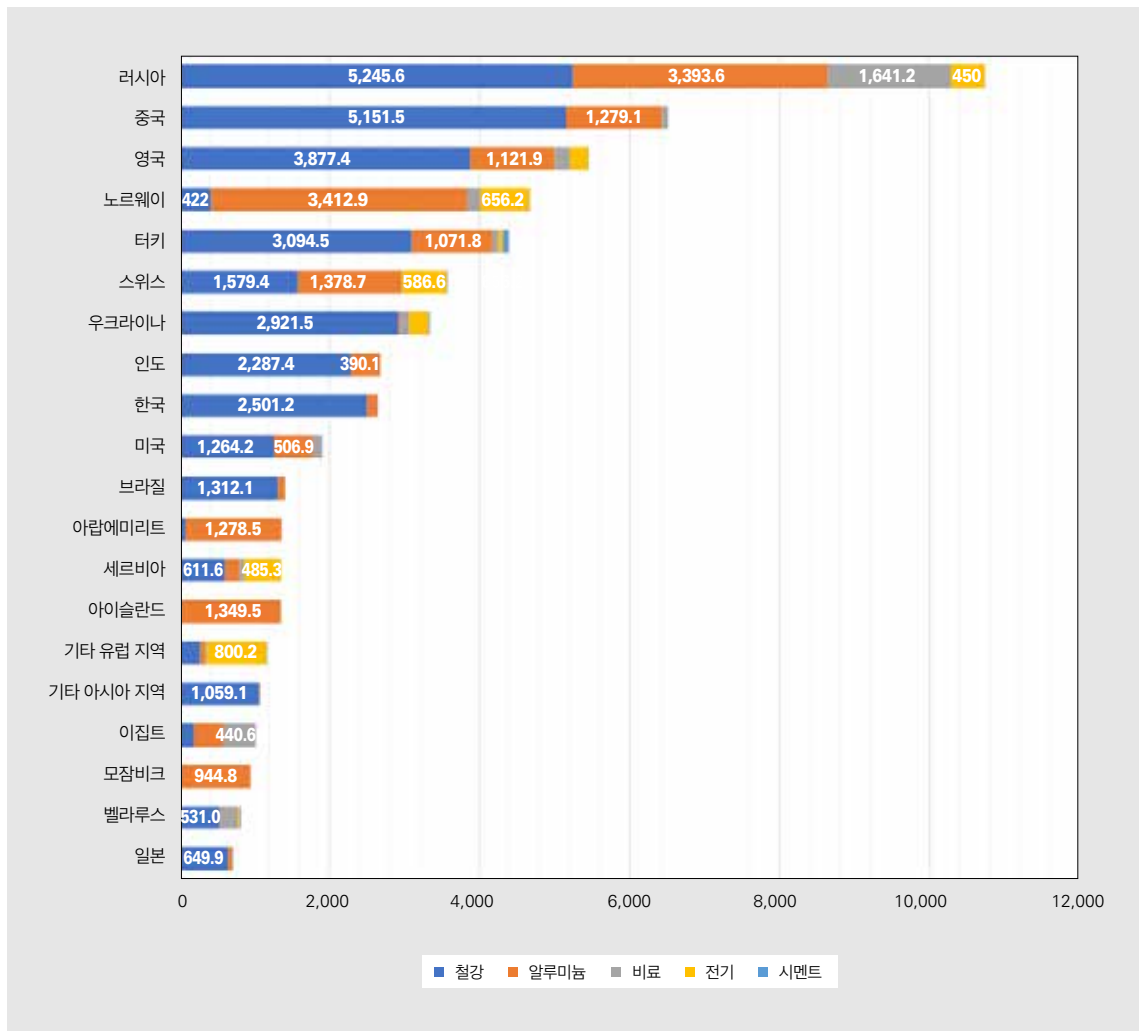
12) 오스트리아는 2025년까지 매년 10€/tCO₂e씩 인상, 아일랜드는 2030년까지 100€/tCO₂e로 인상, 네덜란드는 매년 10.87€/tCO₂e씩 인상하여 2030년 128.71€/tCO₂e로 인상, 노르웨이는 2030년까지 2,000NOK/tCO₂e로 인상 목표

탄소가격의 장기적인
감소 움직임이 없는 점과
Top-down 형태의
국제적 규범화가
계속되는 점을 보면,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탄소감축 노력의
국제적 규범화를
가속화시킬 여지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에너지 위기는 탄소감축 노력의 국제적 규범화를 후퇴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가속화시킬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탄소국경 조정제도 도입 및 탄소거래제도 개선 법안을 가결하였다. 물론 입법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경제상황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었다(설동근 외, 2022). 하지만 환경위원회 파스칼 캉팡 위원장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뿐

[그림 2] CBAM에 노출된 무역량

(단위: 백만달러)



주: CBAM 제안에 포함되는 EU 27개국의 수입품 금액 평균(2015~2019년)을 상위 20개 수출국에 대하여 나타냄
출처: Resourcetrade.earth(202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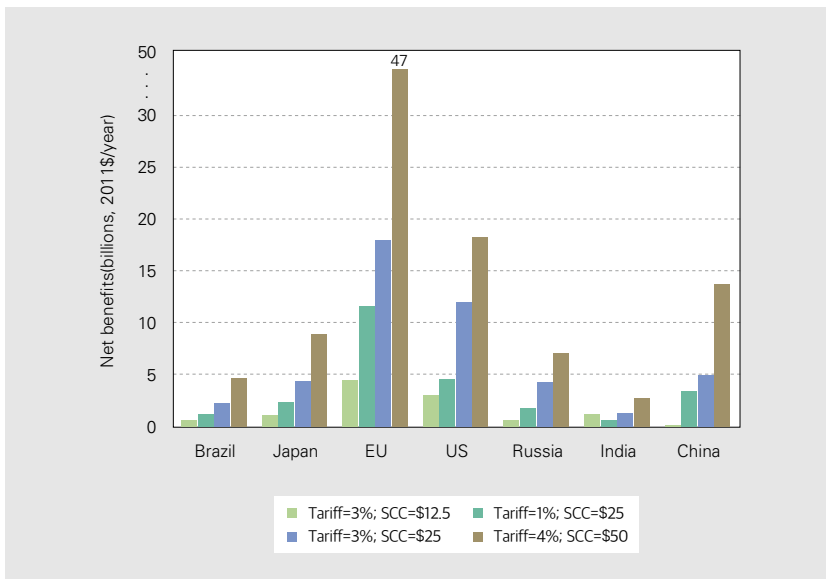
만 아니라 친환경 전환 가속 모두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합의안을 증재하였다(한국무역협회, 2022). 이를 볼 때 에너지 위기는 EU의 탄소국경 조정을 후퇴시키기보다는 오히려 EU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경우 CBAM이 자국의 이익을 해칠 것을 우려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거부할 수 없는 움직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2021). 특히 에너지 위기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시작되었다는 점은 오히려 미국이 CBAM을 지지하고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비록 공화당의 경우 환경정책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CBAM이 러시아와 중국에 가장 큰 영향을 가져다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그림 2] 참조), 미국은 당파 간의 이견과는 무관하게 CBAM을 찬성하고 유사한 제도를 따라서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Washington Post, 2022). Climate Leadership Council(2022)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의 76%가 탄소감축 노력을 하는 미국 기업들을 지원하고 다배출 국가를 제재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하였으며, 77%는 미국의 동맹국들과 함께 탄소 다배출 상품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Top-down 형태의 탄소감축 노력의 국제적 규범화는 계속 진행 중이며, 후퇴되고 있다는 근거는 부족하다. 특히 EU와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CBAM

미국은 CBAM이 자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거부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위기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시작된 점도 미국이 CBAM을 지지하고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림 3] 무역규제를 동반한 기후클럽 형성에 따른 순편익



출처: Nordhaus(2015), p. 1361, Figure 7.

탄소감축 노력을 위한 국제적 규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또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는 등 탄소감축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과 같이 무역제재를 동반하는 탄소감축을 규범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CBAM과 같은 무역제재를 동반한 탄소감축 질서하에서 EU와 미국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동일한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남아프리카와 유라시아 국가들은 Top-down 방식의 탄소감축 노력에 따라 음(-)의 편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탄소감축 관련 정책방향 제언

탄소감축 노력을 위한 국제적 규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또한 탄소감축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재정제도 측면에서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기후대응기금 신설, 탄소중립 친화적 지출프로그램 구축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기획재정부, 2020). 2020년 12월 30일에는 파리협정에 따른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UN에 제출하고 2030년에 2017년 대비 24.4%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다. 2021년 9월 24일에는 「탄소중립기본법」¹³⁾을 제정하였으며 온실가스의 최소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법제화하였다. 2021년 10월 18일에는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하여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할 것을 제안하고, 이 내용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하였다(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1). 한편 2022년 10월 26일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가. 파리협정에 기초한 탄소감축량 목표에 대한 평가

정부는 2021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하여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할 것으로 감축목표를 상향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 채택, 주요국의 NDC 상향, 기후위기의 심각성,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앞서 논의한 탄소감축 노력의 국제적 규범화의 특징에 기초해 본다면 정부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제적 규범 준수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2년 3월 25일 시행, 본법의 시행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EU의 탄소국경 조정 등 탄소가격 부과 대응을 위한 부수적 목표로 고려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파리협정은 참여 국가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기초한 다자간 협약으로서 EU와 G7 등이 주도하고 있는 탄소감축의 국제적 규범화와는 궤를 달리한다. 파리협정은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한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국가 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선진국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많은 개발도상국의 동참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를 바탕으로 개별 국가가 자발적인 탄소감축량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파리협정에 기초한 탄소감축 목표는 목표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30년을 기준으로 설정된 장기감축 목표는 EU의 탄소국경 조정제도와 같은 탄소가격 부과 움직임에 대응하여 국내 탄소가격을 설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EU의 탄소국경 조정제도는 2023년 시범 도입되고 2026년 본격 시행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탄소가격 부과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정책 설정의 우선순위로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장기적인 목표로 두되, 이와는 별도로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탄소가격 부과에 대응하는 가격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실효성 강화

정부의 국정과제와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은 배출권 거래제도의 이상할당을 확대하고,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고도화를 검토하고, 이로 인해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탄소국경 조정제도와 같은 국제적 탄소가격 부과에 대응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탄소세와 같은 정책에 비해 명확한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개별 국가 내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배출권 거래제도와 함께 사용되는 다른 정책의 효과를 흡수하여 상쇄시켜버린다는 점이다. 다른 정책이 함께 시행되는 경우 이는 탄소배출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탄소배출권의 가격을 낮추게 되므로 탄소배출권으로 인한 탄소감축 효과가 낮아져 새로운 정책의 도입 효과가 상쇄되어 버린다(Goulder and Schein, 2013; 윤여창, 2021;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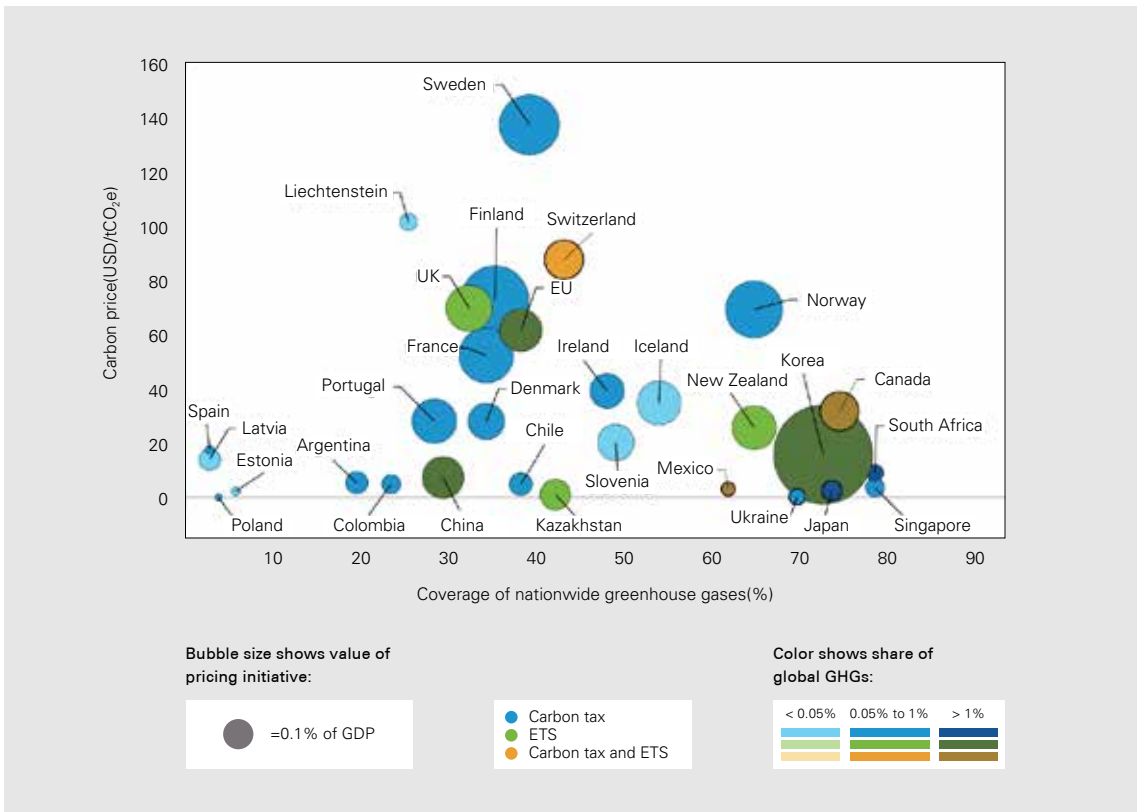
EU의 탄소국경 조정은 2026년 본격 시행될 계획이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장기적인 목표로 두되, 이와는 별도로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탄소가격 부과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느슨하게 설계되어
실질적인 감축노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정책의 효과만을
줄여버리게 되므로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종민, 2021). 즉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다른 제도와 합쳐져서 감축효과를 내는 제도가 아니라 해당 제도 자체가 주도적인 감축효과를 내어야지만 실효성이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만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느슨하게 설계되어 실질적인 감축 노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정책의 효과만을 줄여버리는 정책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자체가 실효성이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탄소배출권 제도의 단점은 해당 제도의 실효성보다 정치적 수용성을 더욱 강조하는 경우 그 부정적인 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배출권 거래제도의 경우 탄소 집약적인 산업에 무상할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탄소배출의 부담을 낮춰주고,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어 탄소세보다 정치적인 수용성이 높은 편이다(Goulder and Schein, 2013; Weitzman, 2017).^{14, 15} 하지만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일반적으로 탄소배출권 제도하에서 무상할당된 배출권

[그림 4] 주요국의 탄소가격과 커버리지, 시장가치



주: 파란색 계열은 탄소세를 운용하는 국가, 초록색은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용하는 국가, 주황색은 두 제도를 모두 운용하는 국가를 의미하며, 원의 면적은 해당 제도가 커버하는 탄소가격의 시장가치(탄소가격 × 탄소배출량)의 GDP 비중을 의미한다.

출처: Parry et al.(2021), p. 3, Figure 1.

의 시장가치는 해당 제도하에서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탄소 비용보다 훨씬 큰 경향이 있다(Goulder et al, 2010; Weitzman, 2017). 심한 경우 무상할당으로 인한 기업의 배출권 수입이 탄소가격 부담보다 더 큰 우발이익(Windfall profit)을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Spash and Lo, 2012; Hobbie et al., 2019) 배출권 거래제도가 실효성 있는 탄소가격 부과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림 4]는 주요국의 탄소가격제도의 가격과 커버리지, 그리고 시장가치(탄소가격×탄소배출량)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그림 5]는 유사한 그림이나 시장가치 대신 재정수입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림 4]에서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도의 시장가치는 2022년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배출권 총량 589MtCO₂e, 배출권 거래가격 22,700KRW/tCO₂e(19USD/tCO₂e)으로 시장가치는 13조 3,700억원가량이 되므로 GDP의 0.62% 정도가 된다. 한편 [그림 5]에서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도의 정부 수입은 2022년 기준 약 2,900억원이다.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도의 시장가치는 GDP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큰 편이다. 이는 한국이 탄소배출량이 많고 배출권 거래제도가 커버하는 영역이 포괄적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하지만 [그림 5]를 보면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입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배출권 가격이 대체로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무상할당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가 탄소감축을 위한 충분한 가격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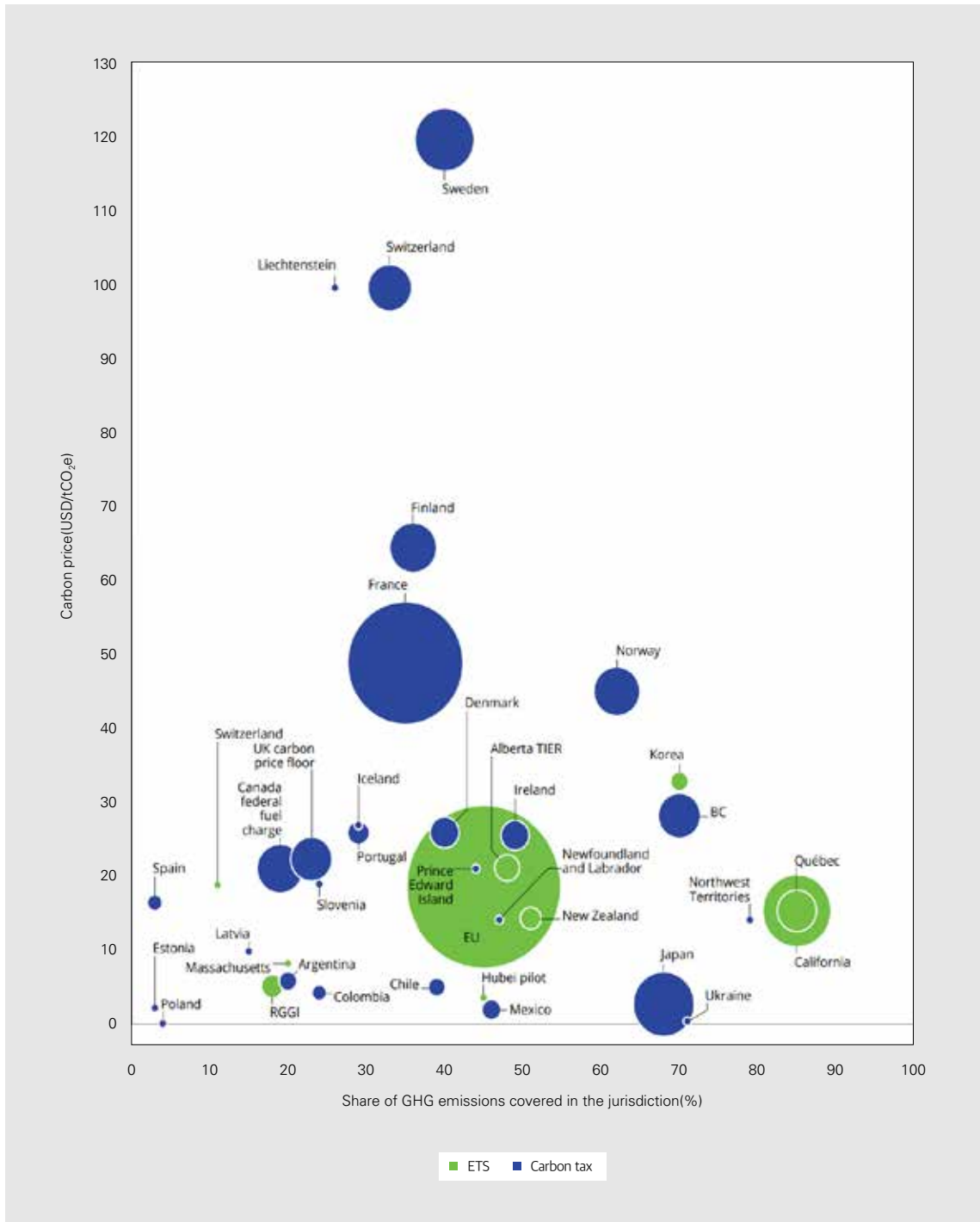
EU의 탄소국경 조정제도와 같은 탄소가격 규제가 국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가격부담이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배출권 거래제도의 강화가 실질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 기업들은 가능하면 무상할당의 양을 늘리고 탄소배출권의 가격을 낮추기를 원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용성의 문제를 우려하여 탄소가격을 적절하게 부과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해당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업에 불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부담가능한 수준의 탄소가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배출권 거래제도의 가격 전망 제시나 배출권 거래제도의 상·하한 가격 도입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기업들과 국제사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도의 시장가치는 GDP 대비 매우 큰 편이지만 배출권 거래제도의 재정수입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은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가 탄소감축을 위한 충분한 가격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14) 이는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으로, EU의 ETS의 경우에도 탄소 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무상할당을 제공한다.

15) 이론적으로는 탄소세의 경우에도 배출권 거래제도의 무상할당에 해당하는 양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주면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이러한 점은 잘 부각되지 않는 편이다(Goulder and Schein, 2013).

[그림 5] 주요국의 탄소가격과 커버리지, 재정수입



주: 파란색 계열은 탄소세를 운용하는 국가, 초록색은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를 의미하며, 원의 면적은 해당 제도들이 창출하는 재정수입이 전체 정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출처: World Bank(2020), Figure ES. 4.

다. 탄소가격의 부과에 대한 수용성

앞서 논의하였듯 탄소감축 노력의 규범화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탄소가격의 부과는 장기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업에 탄소가격을 부과하면 국내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 기업에 탄소가격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탄소감축 노력을 충실히 하여 국가적 공조가 이루어질 때만 국내에 탄소가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는 다른 나라가 먼저 탄소배출량을 감축하지 않으면 우리도 감축하지 않겠다고 하는 관망(wait and see) 전략이 설득력이 있는 구호로 들리기 쉽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배진수 외(2022)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요인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한 1,015명의 응답자에게 이산선택실험 모형하에서 탄소가격 체계의 여러 대안에 대해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식 (3)과 같은 확률호용 모형을 통해 선호를 추정하였다.

$$V_{ij} = \overline{V}_{ij} + \epsilon_{ij} = \alpha T_{ij} + \sum_{k=1}^3 \gamma_k E_{ij} + \sum_{k=1}^3 \beta_k G_{ij} + \sum_{k=1}^6 \theta_k R_{ij} + \epsilon_{ij} \quad \text{식 (3)}$$

우선 탄소가격 체계의 면제조항 유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자. 응답자들은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에 대한 면제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부정의 선호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고용이 많은 기업에 대한 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선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탄소가격 부과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는 견해보다는, 고용이 많은 기업이 대체로 대기업이거나 재무 상태가 양호할 수 있으므로 면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더 우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해외 국가의 유사정책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미국, EU와 같은 선진국, 중국이나 인도 등 다배출 국가의 탄소가격 도입 여부가 국내의 탄소가격 도입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해 보자면 다른 국가들이 탄소가격을 도입하면 우리도 도입하겠다는 관망 전략을 선호하고 있기 보다는 탄소감축 노력이 국제적인 규범화가 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배진수 외(2022)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요인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응답자들은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및 고용의 감소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탄소감축 노력의 국제적 규범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선택실험 모형 추정결과

특성	수준	계수
탄소가격의 크기	▪ (0.5, 1, 2, 4, 6)만원/톤	-0.217*** (0.00899)
면제 조항의 유무	▪ 면제 조항 없음	-
	▪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 면제	-0.0143(0.0443)
	▪ 고용이 많은 기업 면제	-0.181*** (0.0497)
해외 국가 유사정책 도입 동향을 고려한 도입시기	▪ 해외 국가 도입 여부 관계없이 도입	-
	▪ 미국, EU 등 선진국 도입 시에 도입	-0.00583(0.0422)
	▪ 중국, 인도 등 다배출 국가 도입 시에 도입	-0.0471(0.0409)
탄소배출 비용 수입 활용방안	▪ 특정 목적 없음(국가재정 기여)	-
	▪ 전 국민 균등 배분	0.575*** (0.0560)
	▪ 탄소감축 기술 투자	0.395*** (0.0611)
	▪ 소득세 및 소비세 감면	0.528*** (0.0617)
	▪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 지원	0.427*** (0.0603)
	▪ 법인세 감면	-0.0630(0.0646)
상수		0.778*** (0.0648)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2. 더미 변수에 대한 계수 값은 참조변수에 대한 차이를 의미함
 3. 표본 수는 응답자들이 응답한 선택상황의 수를 의미하며 1인당 9개를 응답했기 때문에 총 980명의 응답자의 응답이 사용된 것임
 4. *** p < 0.01, ** p < 0.05, *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출처: 배진수 외(2022), <표 V-3>

마지막으로 탄소가격 수입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목표 없이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것보다 전 국민 균등 배분, 탄소감축기술 투자, 소득세 및 소비세 감면,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 지원의 특정 목표로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으며, 선호의 강도는 대체로 유사하였다. 반면 법인세 감면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선호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는 탄소가격 부과로 인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본인들이 부담하게 될 직접적인 경제적 유인이나 경제 전체의 형평성, 혹은 탄소감축을 통한 환경 개선에 더 큰 선호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응답자들의 견해는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및 고용의 감소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관망전략을 취하기보다는 탄소감축 노력의 국제적 규범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탄소가격 수입의 활용방안은 단순히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일반회계로 편입하기보다는 특정 목적의 용도로 설정할 때 탄소가격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V. 요약 및 시사점

탄소감축 노력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적 공조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지난 30년간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과 같은 다자간 협정을 통해 탄소감축 노력의 국가적 공조를 이루고자 하였으나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편이었다.

최근 탄소감축 노력의 국제적 규범화는 EU나 미국의 탄소국경 조정제도, G7의 기후클럽 창설 노력, IMF와 같은 국제기구의 탄소가격 도입 권고 등 Top-down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탄소가격을 구속력 있는 협약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석탄발전과 같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일부 늘어나고 있으나, 이것은 탄소감축 노력의 국제적 규범화를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에너지 효율 강화를 통해 탄소감축 노력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앞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같은 배출량에 대한 감독보다는 탄소가격의 부과에 대한 국제적 압력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배출권 거래제도의 강화와 같은 탄소가격 부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느슨한 배출권 거래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배출권 거래제도의 강화 혹은 탄소가격 부과에 대해서 기업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일 수 있겠지만 설문조사를 통한 국민들의 선호는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나 실업을 상승과 같은 우려는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응답자들은 고용이 많은 기업에 탄소세를 면제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재무성과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탄소가격 면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른 국가들의 탄소가격 도입 여부는 국내 탄소가격 부과에 대한 선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관망 전략을 선호하기보다는 탄소감축 노력의 국제적 규범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탄소감축 노력의 국제적인 흐름 앞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같은 배출량 감독보다는 탄소가격 부과에 대한 국제적 압력에 대응하여 현재의 느슨한 배출권 거래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만옥, 『바람직한 탄소세 도입방향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2014.
- 박누리, 『EU 탄소국경 조정제도(CBAM) 합의(안) 대응현황과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3.
- 배진수·고지현·정재현, 『탄소가격체계 개편의 수용성 제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산업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2002.
- 유종민, 『탄소세 부과대상 및 최적세율에 대한 정책연구 -배출권 시장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윤순진,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내용과 과제』, 『에너지 포커스』, 제18권 제4호, 통권 82호,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 윤여창, 『탄소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21.
- 이동규, 『해외의 탄소세 운용 동향 및 탄소가격에서의 시사점』, 『에너지포커스』, 제18권 제4호, 통권 82호,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 이병윤, 『최근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책 후퇴 움직임과 향후 전망』, 『주간금융브리프』, 31(17), 2022, pp. 18~20.
- 환경부, 『파리협정 함께보기』, 2022.
- Bolton, P., Despres, M., Da Silva, L. A. P., Samama, F., & Svartzman, R., *The Green Swan - Central Banking and Financial Stability in the Age of Climate Change*, BIS, 2020.
- Cléménçon, R., "The Two Sides of the Paris Climate Agreement: Dismal failure or historic breakthrough?," *The Journal of Environment & Development*, 25(1), 2016, pp. 3~24.
- Cooper, R. N., "The Case for Pri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 『Global Carbon Pricing: The Path to Climate Cooperation』, The MIT Press, 2017, pp. 91~98.
- Cramton, Peter, Axel Ockenfels & Steven Stoft, "Global Carbon Pricing," *Global Carbon Pricing: The Path to Climate Cooperation*, The MIT Press, 2017, pp. 31~90.
- Gollier, C., & Tirole, J., "Effective Institutions against Climate Change," in 『Global Carbon

- Pricing: The Path to Climate Cooperation, The MIT Press, 2017, pp. 165~204.
- Goulder, L. H., & Schein, A. R., "Carbon Taxes versus Cap and Trade: a Critical Review," *Climate Change Economics*, 4(3), 2013, pp. 1~28.
- Goulder, L. H., MAC Hafstead, & M Dworsky, "Impacts of alternative emissions allowance allocation methods under a federal cap-and-trade program,"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60(3), 2010, pp. 161~181.
- Hobbie, H., Schmidt, M., & Möst, D., "Windfall Profits in the Power Sector during Phase III of the EU ETS: Interplay and effects of renewables and carbon price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240, 2019.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The IPCC Scientific Assessment*, 1990.
- Nordhaus, W., "Climate Change: The ultimate challenge for economics," *American Economic Review*, 109(6), 2019, pp. 1991~2014.
- _____, "Climate Clubs: Overcoming free-riding in international climate policy," *American Economic Review*, 105(4), 2015, pp. 1339~1370.
- Parry, I., Black, S., & Roaf, J., "Proposal for an International Carbon Price Floor among Large Emitter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Staff Climate Notes 2021/001*, IMF, 2021.
- Spash, C. L., & Lo, A. Y., "Australia's Carbon Tax: A sheep in wolf's clothing?," *The Economic and Labour Relations Review*, 23(1), 2012, pp. 67~86.
- Weitzman, M. L., "Can Negotiating a Uniform Carbon Price Help to Internalize the Global Warming Externality?,"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sts*, 1(1/2), 2014, pp. 29~49.
- _____, "Voting on Prices vs. Voting on Quantities in a World Climate Assembly," *Research in Economics*, 71(2), 2017, pp. 199~211.
-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0*, 2020.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2021. 10. 18., <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boardNo=100&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2>, 검색일자: 2023. 3. 17.

『전기신문』, 「ESG 발 빠른 글로벌 금융기관들...한국은?」, 2022. 10. 25.,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384>, 검색일자: 2023. 2. 20.

Climate Leadership Council, "Poll: Reliable Republican Voters Value Climate Policy that Leverages U.S. Carbon Advantage," November 1, 2022, <https://clcouncil.org/press-release/poll-reliable-republican-voters-value-climate-policy-that-leverages-u-s-carbon-advantage/> (accessed February 20, 2023)

Jean Chateau, Florence Jaumotte, Gregor Schwerhoff, "Why Countries Must Cooperate on Carbon Prices," IMF BLOG, May 19, 2022,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2/05/19/blog-why-countries-must-cooperate-on-carbon-prices> (accessed February 20, 2023)

Resource Trade. Earth, "Which countries are most exposed to the EU's proposed carbon tariffs?," August 20, 2021, <https://resourcetrade.earth/publications/which-countries-are-most-exposed-to-the-eus-proposed-carbon-tariffs#carbon-marketchart> (accessed February 20, 2023)

The Washington Post, "Republicans are Embracing Carbon Border Fees to Counter Putin," March 2, 2022,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2/03/02/republicans-are-embracing-carbon-border-fees-counter-putin/> (accessed February 20, 2023)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 https://carbonpricingdashboard.worldbank.org/map_data (accessed February 20, 2023)

02

근로장려세제 (EITC)가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¹⁾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jhko@kipf.re.kr

1. 서론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한국 사회는 2017년도에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²⁾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2018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이하)의 비중이 줄어들고, 2021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인구절벽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³⁾ 2025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20.3%가 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⁴⁾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젊은 세대들의 노인인구 부양 부담과 국가 재정지출 부담으로 이어진다. 201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6.7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20년에는 4.6명, 2050년에는 0.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⁵⁾ 또한 노인에 대한 국가재정의무지출(기초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운영)도 2010년 3조 790억원 수준에서 2023년에는 20조원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⁶⁾

1) 본고는 2023년 기본과제인 「고령화 사회에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은퇴자 및 고령층 지원을 중심으로」의 일부를 발췌 및 수정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혀 둔다.

2) 「한겨레」(2018. 8. 27.)

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3, 검색일자: 2022. 12. 24.

4) 통계청 누리집, 「2020 고령자 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5322, 검색일자: 2022. 12. 24.

5) 통계청,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ByNumber/PopulationByNumberMain.do?mb=Y&menuId=M_1_5&themald=E01, 검색일자: 2022. 12. 24.

6) 국회예산정책처(2022)

이에 정부는 총근로기간을 연장시켜 노년기에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정부 및 미래세대의 부양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다각도로 고안·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 60세나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공공형·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활동비 및 사업비를 제공한다. 또 다른 예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은퇴한 전문인력에게 지역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역할 강화 및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이와 같이 공공 부문을 통한 인력흡수를 기반으로 하는 재정사업들은 직접적으로 소득 및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는 재정부담을 완전히 덜어주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방법 중 한 가지는 민간 부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층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는 고령층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동시에, 주된 일자리로부터 은퇴한 후 임금이 급격히 하락하여 시장에서 충분한 소득을 지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전하는 역할 또한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⁷⁾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가 50세 이상의 준고령자 및 고령자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2011~2021년도 제4~14차 「재정패널」(근로장려금 수급 기준 2010~2020년도)을 사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준고령자 및 고령자는 근로장려금 연령요건이 2013년도부터 가구주의 60세 이상, 2016년도부터 50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근로장려세제의 주된 수급자(45%)가 되었다. 특히 50대 수급자를 포함한 것은 연령요건 완화의 변화를 경험한 수급자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은퇴로 경제활동 참여에 변화를 겪는 그룹을 포함하여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본 표본을 활용한 분석에 더하여 50~59세 미만과 60세 이상을 부표본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이질적인 반응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근로장려금이 저소득 고령자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더 나아가 소득보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고령자라는 표현은 50세 이상의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지칭하여 사용한다.

효과 분석을 위해서 근로장려금 수급조건을 사용하였는데, 2010~2020년도 제도 변화에 따른 수급요건의 변화를 변수화하여, 수급자격의 변화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에는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수급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요건이 존재한다(예로는 소득요건이 있다). 이

본고는 대표적인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가 50세 이상 준고령자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7) 남재량(2020)에 따르면 퇴직 후 3년 경과 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비율은 30.3%로, 퇴직 전의 11.4%에 비해 3배 증가한다.

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최근까지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였으나,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러한 내생적인 요건을 포함하는 경우 개인이 행동을 변화시켜 수급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도 포함하게 되어 추정치에 편의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편의를 제거하고자 ‘외생적 수급요건의 변화’만을 사용하여 변수를 생성한 후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사용 방법론, 데이터, 지원대상 등에 따라서 결과가 상이하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는 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 먼저 근로장려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는데, 이는 노동시간의 변화보다는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이었다(김재진·이상은·이철인, 2014; 이대웅·권기현·문상호, 2015). 또한 근로장려세제의 세 가지 구간 중에서는 점증구간의 가구에서 노동제고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신우리·송헌재, 2018; 김문정·김빛마로, 2020). 반면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하는 논문에는 권성오·홍우형(2021), 전영준(2008) 등이 있다.

최근까지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였으나,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근로장려세제가 고령 근로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일부 담고 있는 연구로 이정우·홍우영·김두언(2022), 박지혜·이정민(2018)을 들 수 있다.

이정우·홍우영·김두언(2022)은 「재정패널」 제5-11차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장려세제의 연령요건 완화가 단독가구 가구주의 노동공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즉 「재정패널」을 사용하여 2013년, 2016년, 2017년, 2018년에 있었던 단독가구 가구주에 대한 연령요건 완화 효과를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60~69세 단독 가구주들은 노동시장 참여나 노동시간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공급의 변화를 보이는 그룹도 있었는데, 50~59세 단독가구의 가구주와 30대 단독가구의 가구주 중에 점증구간에 있는 가구주들은 평균 근로시간을 각각 24시간, 31시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혜·이정민(2018)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근로장려세제가 2008년도에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세부 자격요건 및 수급액의 규모가 변화하였는데, 이러한 변동분 중 외생적 요인들을 변수화하여

수급자격변수(Eligibility)와 수급정도변수(Intensity)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정책모수변수가 종속변수인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한국복지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의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수급자격(Eligibility)이 주어지는 경우 수급정도(Intensity)가 커질수록(점감률이 높아질수록)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60세 이상 65세 이하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고령의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장려금에 대한 노동시장 참여 유인효과가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고는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준고령자 및 고령자의 근로장려금 수급자들의 경제활동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정우·홍우영·김두연(2022)과 박지혜·이정민(2018)의 연구에 더하여 준고령자 및 고령자 단독가구 가구주의 경제활동이 근로장려금의 수급자격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0대 이상 고령자의 노동공급 및 소득보전에 근로장려제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고령의 근로장려금 수급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과 이정우·홍우영·김두연(2022) 등의 연구와 달리 장기간(2010~2020년) 동안 제도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본고의 구성은 제Ⅱ장에서 근로장려제도를 소개하고 도입 이후 제도 확대 및 수급자 구성의 변화를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앞서 간단히 설명한 정책변수를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제Ⅳ장은 결론과 함께 마친다.

Ⅱ. 근로장려제도 소개 및 확대⁹⁾

본 장에서는 근로장려제도 및 수급가구 구성의 변화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1절에서 근로장려금 제도를 간단히 소개하고, 제2절에서는 제도 변화 및 수급가구의 구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본고의 주된 표본이 되는 저소득 준고령자 및 고령자(50세 이상) 단독가구가 근로장려제도의 수급자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고, 그 영향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고령의 장려금 수급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과 장기간(2010~2020년) 동안 제도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9) 제Ⅱ장에 언급되는 연도는 수급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이다.

1. 근로장려세제 소개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환급형¹⁰⁾ 세액공제 제도이다. 2006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되었으며, 2009년도에 처음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다. 이는 기존의 복지제도들이 소득 보전의 효과는 있으나 노동공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해 보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연령요건(2014~2017년도)을 충족하여야 한다. 소득요건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한 총소득금액(가구원 구성에 따라 상이)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2022년도를 기준으로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다([그림 1] 참조).¹¹⁾ 재산요건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2022년도를 기준으로 재산요건은 2억원 미만이다. 2013~2017년도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요건이 있었는데,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2013~2015년), 50세 이상(2016년), 40세 이상(2017년), 30세 이상(2018년)으로 점점 완화되다가, 2019년도에는 연령요건을 폐지하였다.

수급요건을 만족한 가구의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과 부양자녀의 수(2009~2013년)나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의 가구구성(2014년~)에 따라서 달라진다. 2022년도 기준 맞벌이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단독가구는 150만원 수준이었다([그림 1] 참조). 2009~2013년도에는 부양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이 커졌고, 2014년도부터는 맞벌이가구, 홑벌이가구, 단독가구 순으로 최대지급액이 크다.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 효과는 근로장려세제의 구조에서 나온다. [그림 2]와 같이 근로장려금은 일정 구간(점증구간)에서 총급여액이 증가하면 지급액도 증가하는 구조이다. 즉 일을 많이 할수록(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 또한 증가시켜서 추가적인 근로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증가시킴으로써, 근로의 욕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최저생계비를 일정 수준으로 보장해 주는 경우 일을 많이 하여 소득이 증가하면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가 그만큼 줄어들

10)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란 납세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11)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하며, 맞벌이가구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한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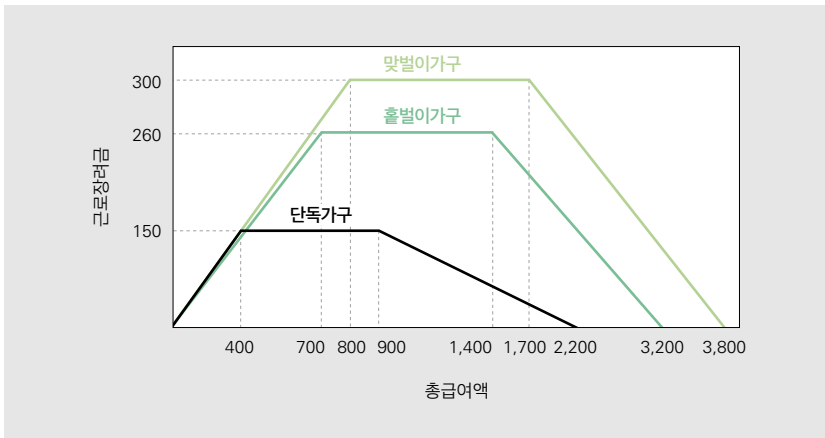
어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점증구간에서 소득 대비 지급액의 증가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점증률인데, 2022년도 맞벌이가구의 점증률은 38%였다. 즉 소득이 1만원 증가할 때 근로장려금은 3,800원 증가하는 것이다.

점증구간 다음으로 나타나는 구간은 두 번째 구간인 평탄구간이다. 평탄구간은 소득의 증가와 관계없이 최대지급액을 지급하는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는 근로장려금으로 인해서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만 있어, 여가를 더 즐기고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 효과는
일정 구간(점증구간)에서
총급여액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는 구조에서
기인한다.

[그림 1] 2022년 근로장려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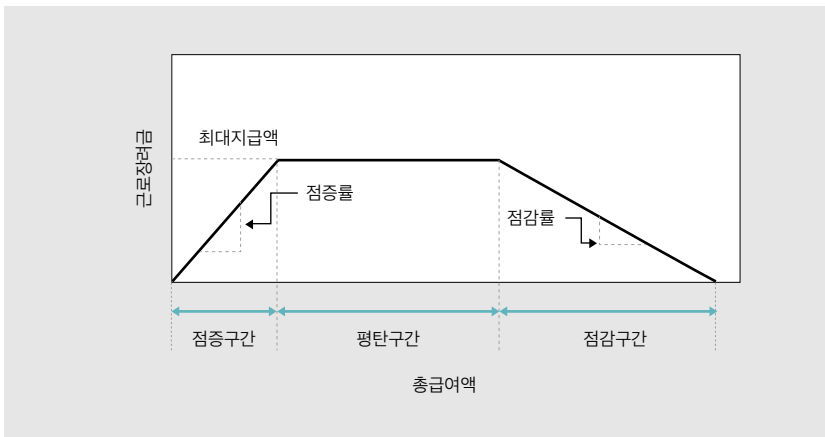
(단위: 만원)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 근로장려금의 구조

(단위: 만원)



출처: 저자 작성

2009년 근로장려금이
 첫 지급된 이후 정부가
 제도를 확대함에 따라
 수급자는
 59만가구에서
 2021년 420만가구로,
 조세지출규모는
 4,500억원에서
 2021년 4.4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노동공급을 줄일 유인이 존재한다. 세 번째 구간은 점감구간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액이 감소하는 구간이다. 이때 소득 증가에 따른 지급액 감소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점감률인데, 2022년도 맞벌이가구를 기준으로 점감률은 14%였다. 즉 소득이 1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1,400원 줄어드는 구조이다.

2.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수급가구의 구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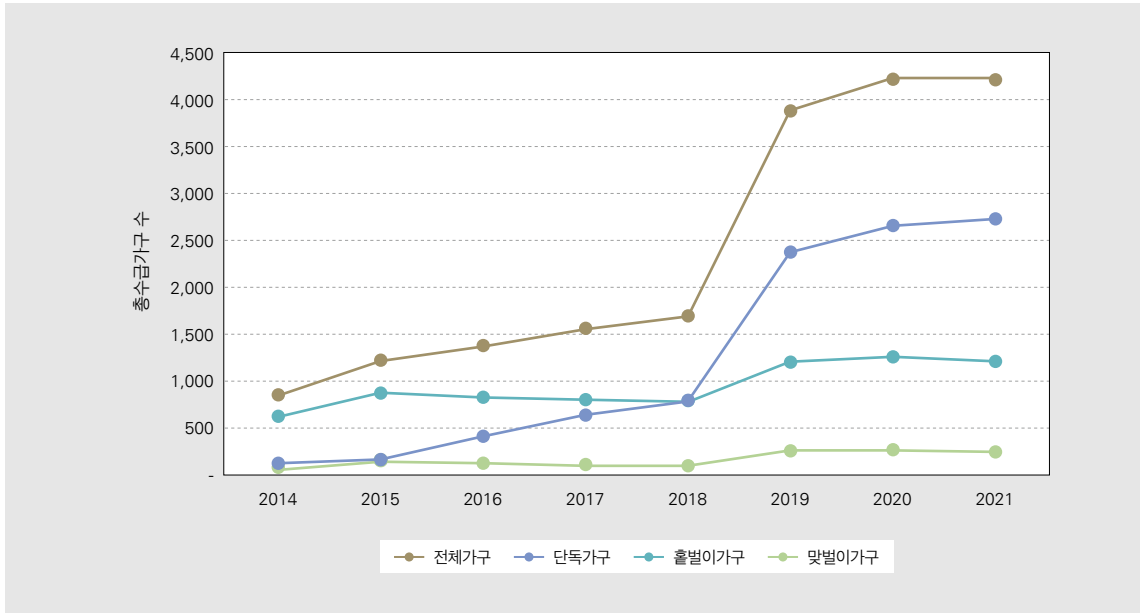
2009년도에 처음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이후 정부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장려금을 증가시키면서 제도를 확대해 왔다. 즉 소득요건을 1,700만원 미만(2009년도)에서 3,800만원 미만(2022년도 맞벌이가구 기준)으로, 재산요건을 1억원 미만(2009년도)에서 2억원 미만(2022년도 기준)으로 완화하였다. 최대지급액 또한 120만원(2009년도)에서 300만원(2022년도)으로 증가시켰다. 그에 따라 수급자는 59만가구(2009년)에서 420만가구(2021년)로, 조세지출규모 또한 4,500억원(2009년)에서 4.4조원(2021년)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더하여 부양자녀가 있어야만 수급자격을 부여하였던 2009~2011년도와 달리 2012년도에는 부양자녀 없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도부터는 부양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도 연령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해졌으며 단독가구주의 연령요건 또한 점차 완화되었다. 즉 60세 이상(2013~2015년)에서 50세 이상(2016년), 40세 이상(2017년), 30세 이상(2018년)으로 점차 완화하다가 2019년도부터는 연령요건을 폐지하여 30세 미만의 청년 단독가구도 수급자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로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구성도 변화하였다. 첫 번째 변화는 단독가구의 수와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을 가구 구성에 따라서 지급하기 시작한 2014년도에 단독가구는 14만 2,778가구였다가 7년이 지난 2021년도에는 273만 6,349가구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그림 3 참조). 단독가구의 수뿐만 아니라 비중 또한 빠르게 증가하였다. 2014년도 단독가구의 비중은 17%로 홑벌이가구(74%)에 훨씬 못 미치는 정도였으나, 단독가구의 연령요건을 완화한 2016~2019년도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도

[그림 3] 가구원 구성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수 변화(2014~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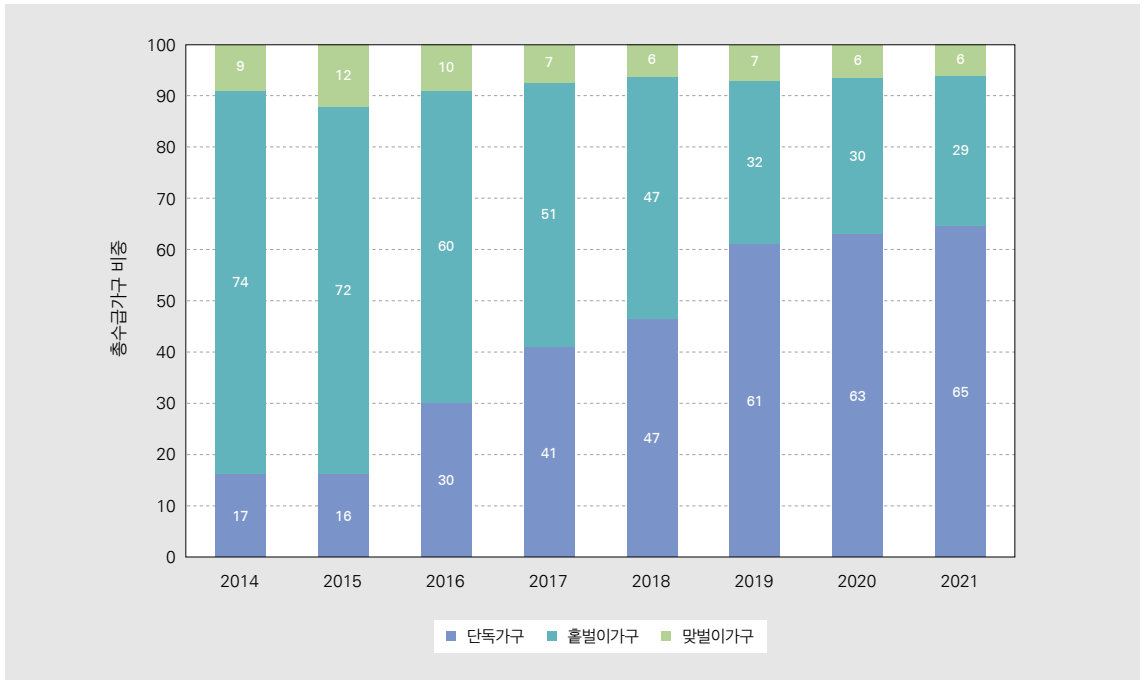
(단위: 천가구)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 가구원 구성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구성 변화(2014~2021)

(단위: %)



출처: 저자 작성

근로장려금 확대로 인해
수급가구 중 단독가구,
60세 이상 및 30세 미만
가구주 가구와 무자녀가구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특히 2018년도 세법개정으로
연령요건 폐지와
소득 및 재산 요건 변화가
수급가구 구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단독가구의 비중은 65%로 홀벌이가구(29%)나 맞벌이가구(6%)보다도 커졌다 ([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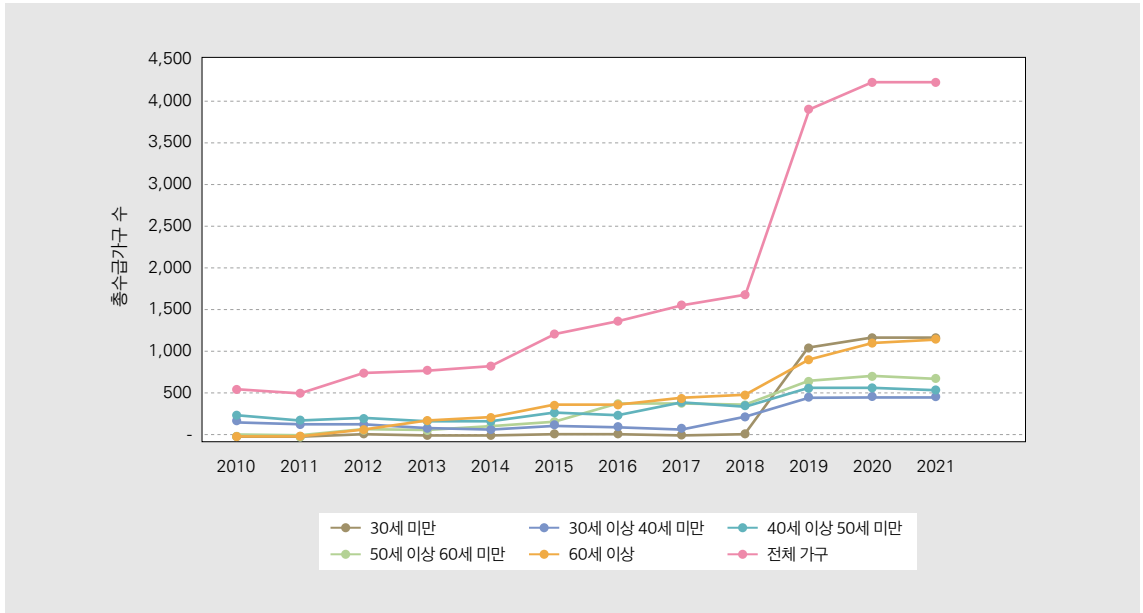
두 번째 변화는 60세 이상과 30세 미만 가구주의 수급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경우 무자녀가구에 수급자격을 부여했던 2012년도와 2019년도 두 번의 시기에 크게 증가하였다. 수급가구 수도 2011년도 3,572가구에서 2012년도에 9만 4,118가구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후에도 60세 이상 가구주 수급가구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8년도 55만 653가구에서 2019년도 94만 4,051가구로 다시 한번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9년도의 급격한 증가는 2018년도 개정에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인한 효과로 보인다 ([그림 5] 참조). 30세 미만 가구주 수급가구의 경우 2010년도(4만 58가구)부터 2018년도(3만 655가구)까지는 수급가구의 변화가 크지 않고,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미미했다([그림 6] 참조). 하지만 2019년도에 수급가구의 수가 107만 2,358가구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로 증가해, 60세 이상 가구주 수급가구의 비중과 비슷해졌다. 이는 2018년도 세법개정으로 단독가구의 연령요건이 폐지되면서, 다수의 청년 단독가구가 포함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변화는 무자녀 수급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비중 또한 높아졌다는 점이다([그림 7, 8] 참조). 무자녀가구에 처음으로 수급자격이 주어졌던 2012년도에는 수급가구의 수가 23만 8,396가구로 전체 수급가구 중 23%를 차지하였다. 수급가구 중 자녀가 없는 가구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도에 368만 457가구로, 전체 수급가구 중 과반 이상(75%)을 차지하게 되었다. 자녀가 없는 수급가구의 수는 제도의 확대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8년도 개정(2019년도 수급)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의 완화로 수급자 그룹이 확대된 것에 따른 효과에 더하여 연령요건의 폐지로 인하여 단독 청년가구가 다수 편입한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근로장려금의 확대로 인해 수급가구 중 단독가구,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 30세 미만 가구주 가구 그리고 무자녀가구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특히 2018년도 세법개정으로 인한 효과가 컸는데, 연령요건 폐지뿐만 아니라 소득·재산요건의 변화도 수급가구 구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가구주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수 변화(201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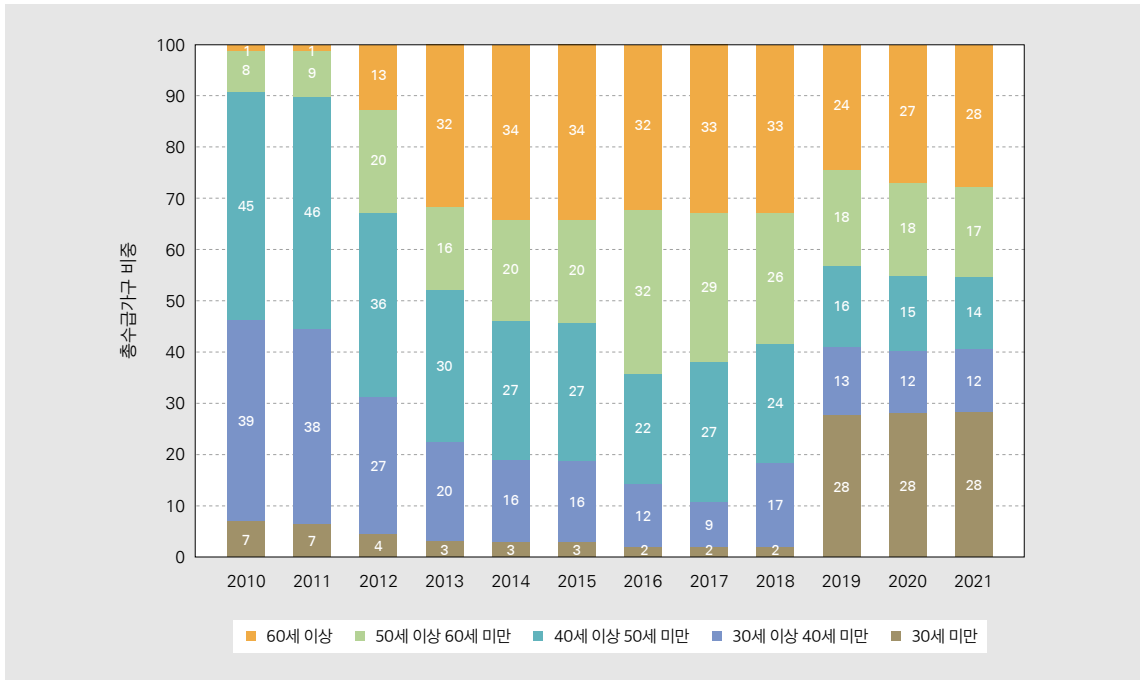
(단위: 천가구)



출처: 저자 작성

[그림 6] 가구주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비중 변화(201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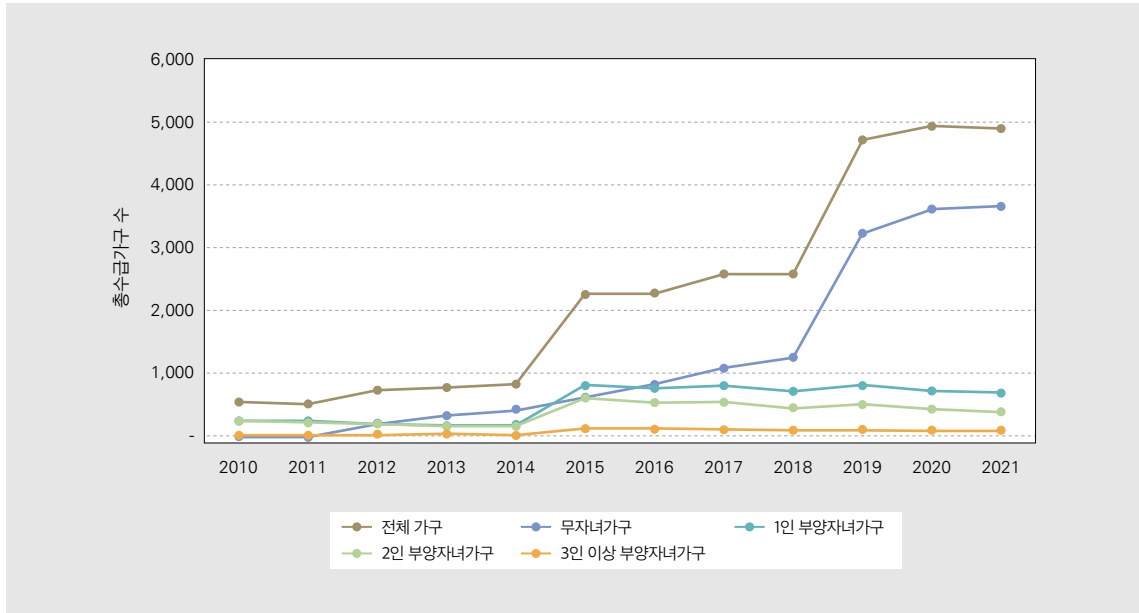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7] 부양자녀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수 변화(201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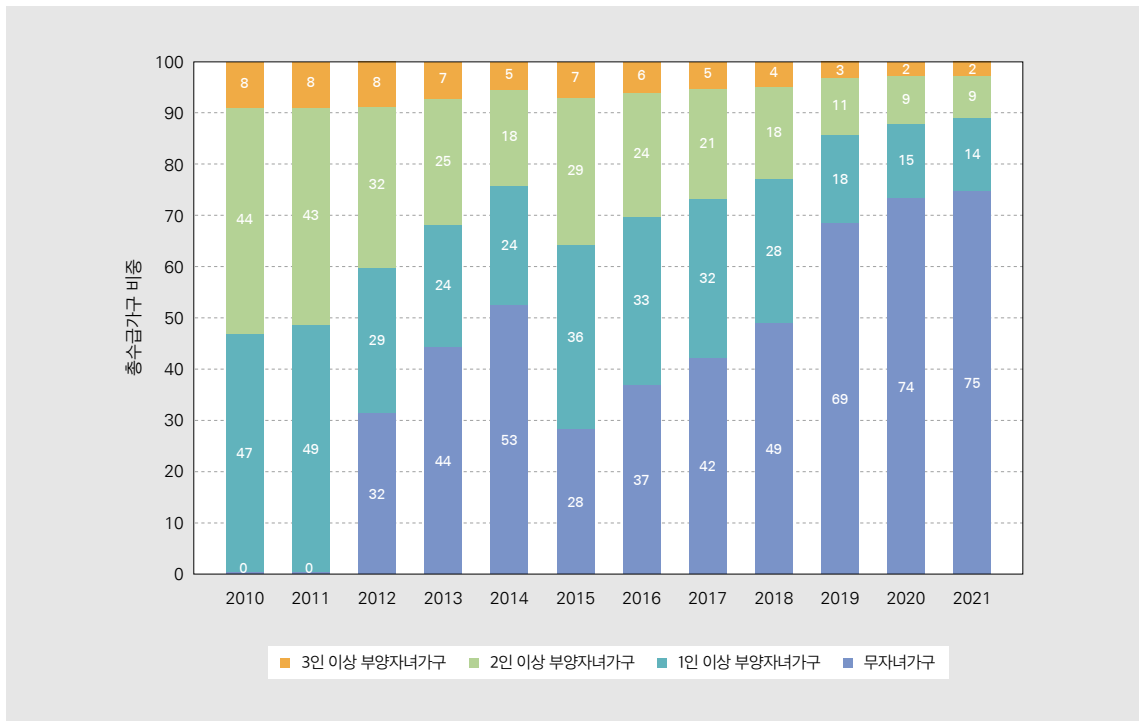
(단위: 천가구)



출처: 저자 작성

[그림 8] 부양자녀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구성 변화(2010~2021)

(단위: %)



출처: 저자 작성

Ⅲ. 근로장려금이 준고령자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번 장에서는 근로장려금이 50세 이상 준고령자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근로장려세제 도입 초반인 2010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0년도까지의 근로장려세제 수급요건 변화 및 그에 따른 수급자격 변화를 사용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5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소득활동 유무, 총급여액 유무, 근로소득 유무, 사업소득 유무, 근로시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는 기존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50세 이상 고령자에 초점을 둔 것과 2019년도 제도 확대(2018년 세법개정)의 효과까지 포함한 장기간에 걸친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것에 공헌점이 있다.

1. 데이터 및 식별방법

분석을 위해 2011~2021년도 제4~14차 「재정패널」¹²⁾(근로장려금 수급 기준 2010~2020년도)을 사용하였다. 사용한 표본은 2013년도를 기준으로 가구의 경상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저소득 단독가구¹³⁾이다. 가구소득 3,600만원은 2020년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 소득요건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표본을 가구소득 측면에서 수급자격이 있는 저소득 가구들로 한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 단독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더불어 준고령자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가구주¹⁴⁾ 나이를 기준으로 2013년도에 50세 이상(1963년 이전 출생자)인 가구주로 표본을 한정하였다. 이에 더해 50대와 60대의 생애주기가 다르다는 점과 근로장려금의 연령요건 완화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2013년도에 60세 이상(1953년 이전 출생자)인 가구주와 2016년도에 50세 이상 59세 미만(1957~1966년도 출생자)인 가구주로 부표본을 나누어서도 분석을 하였다. 단독가구의 연령요건은 2013년도부터 가구주의 나이가 60세 이상, 2016년도부터는 50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분석에 사용한 부표본은 연령요건 완화로 인한 효과를 가장 크게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60세 이상 수급자는 2012~2013년도에 13%에서 32%로 크게 증가하였고, 50세 이상

본고는 근로장려세제가 준고령자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2011~2021년도 제4~14차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12) 본고를 작성할 시기에 제 14차 「재정패널」이 공개되지 않아 학술대회용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3) 본래 단독가구란 배우자, 만 18세 미만의 자녀,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하나, 본고에서는 배우자 및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가구로 정의하였다.

14) 「재정패널조사」에서 정의하는 가구주란 경제적으로 가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현재 가구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나 가구를 경제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뜻한다.

근로장려금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중
외생적으로 주어지거나
내생적이지만
행태변화에 따른 비용이 큰
요건만을 고려하여
Eligibility_{it} 변수를
생성하였다.

수급자 또한 2015~2016년에 20%에서 32%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근로장려금의 효과 분석을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외생적 수급자격을 나타내는 변수를 사용하였다. 근로장려금의 수급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주택요건, 배우자·부양자녀 및 연령요건, 대상요건(신청 제외자)의 다섯 가지 요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중에서 외생적으로 주어지거나 내생적이지만 행태변화에 따른 비용이 큰 요건만을 고려하여 *Eligibility_{it}* 변수를 생성하였다. *Eligibility_{it}*는 연도별로 외생적인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1'을, 그렇지 않은 경우 '0'이 되는 이항변수이다.

외생적인 변수의 예로는 연령요건, 재산요건, 주택요건, 배우자·부양자녀 요건이 있다. 연령요건은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출생연도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외생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재산요건, 주택요건, 배우자·부양자녀 요건의 경우도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배우자·부양자녀 유무의 조정은 큰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생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내생적인 변수의 예로는 소득요건이 있는데, 이는 노동시간을 조정함으로써 근로소득 수준을 조절하여 비교적 쉽게 수급자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과 같은 내생적인 요건을 포함하여 *Eligibility_{it}* 변수를 생성하는 경우 개인이 노동시간을 조정하여 수급불가능 집단에서 수급가능 집단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분석에 포함하여 편의가 발생한다. 즉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노동시간을 조절하여 수급집단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 특정한 개인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정책효과로 추정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요건과 같은 내생적인 요건은 배제하고 외생적 요건만을 고려하여 생성한 *Eligibility_{it}* 변수는 실제 수급자격을 사용할 경우보다 추정의 편의를 줄여 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외생적 요건만을 고려한 수급자격 변수는 박지혜·이정민(2018)에서 먼저 사용된 바 있는데, 본고에서는 2018년도 세법개정에 따른 변화까지를 포함하여 변수를 생성한 것과 준고령자 및 고령자 단독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것에 차이점이 있다.

수급가능변수(*Eligibility_{it}*)를 사용한 회귀분석은 외생적인 정책 변화만을 사용하여 실제 수급 및 수급변수를 사용하는 추정에 비하여 편의를 줄여 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급가능변수와 실제 수급 여부 간에 관련성이 떨어지면 분석의 신뢰성 또한 낮아질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즉 실제로는 수급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급가능변수(*Eligibility_{it}*)에 따르면 수급을 받은 사람으로 분류

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많으면 분석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급가능변수(*Eligibility_{it}*)를 실제 수급 여부에 대한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로 사용한 회귀분석을 강건성 분석으로 추가하고 그에 대한 결과도 제시하였다.

2010~2020년간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요건이 변화하였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완화되었는데, 소득요건은 수급 가능한 최대 소득기준이 1,700만원 미만(2009년도)에서 3,800만원 미만(2022년도 맞벌이가구 기준)으로, 재산기준은 1억원 미만(2009년도)에서 2억원 미만(2022년도)으로 증가하였다. 배우자·부양자녀 유무 요건은 2009년도에는 부양자녀가 1명 이상, 2012년도부터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 또한 2013년도부터는 부양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도 만 60세 이상인 경우라면 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 단독가구에 대한 연령요건(2019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대상요건(2014년), 주택요건(2017년)은 세법개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구성된 표본의 기초통계량은 <표 1>과 같다. 먼저 주표본인 2013년도 기준 50세 이상(1963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평균연령이 74세로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률은 22%, 대학 졸업률은 6%에 그쳐 교육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1), (2) 참조).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24% 정도인데, 그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1% 정도이고 23%는 사업소득이 있었다. 즉 분석에 사용한 고령자 표본의 대부분은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이 없고, 소득활동¹⁵⁾은 대부분 사업 및 자영업인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 수급기준이 되는 총급여액(근로소득 및 사업소득)¹⁶⁾은 546만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인 1,800만원(1인 가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은 평균 2,400만원 수준이었으며, 43% 정도가 특별시 및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구원 수는 1.27명으로, 대부분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본 분석을 위해 구성한 2013년도 기준 60세 이상(1953년 이전 출생자) 표본과 2016년도 기준 50세 이상 59세 미만(1957~1966년 출생자) 표본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1>의 (3)~(6)과 같다. 60세 이상으로 표본을 한정했을 때 평균연령은 77세로 주표본의 평균연령(74세)과 비슷하나 좀 더 높았다. 주표본과 비교하였을 때 소득활동 수준(17%)이 낮고, 사업소득의 유무(16%), 총급여액(156만원), 사업소득(254만원)은 더 낮았으나 교육수준, 거주지역, 가구원 수 등은 주표본과 비슷한 수준이다(<표 1>의 (3)과 (4) 참조).

표본의 기초통계량을 보면 주표본인 2013년도 기준 50세 이상의 경우 평균 연령이 74세로 높았으며, 고령자 표본의 대부분은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이 없고 대부분의 소득활동이 사업 및 자영업인 것으로 보인다.

15) 소득활동이란 소득, 이익, 봉급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고용되거나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주간 1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가족의 일을 임금을 받지 않고 돕는 경우(무급 가족종사자)도 포함되며, 이자 및 배당소득, 양도소득의 경우 발생한 소득이 100만원 이상일 때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유급 휴직자 및 3개월 미만의 무급 휴직자인 경우는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나 3개월 이상의 무급 휴직자는 소득활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16) 총급여액은 2015년 이전에는 근로소득, 2015년부터는 근로 및 사업소득의 합으로 정의하여, 근로장려금이 2015년부터 자영업자에게도 확대 적용된 것을 반영하였다. 데이터의 한계로 종교인소득은 포함하지 않았다.

60세 이상으로 한정된 부표본을 주표본과 비교한 결과 소득활동과 사업소득 유무,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주표본보다 낮았으나 교육수준, 거주지역, 가구원 수 등은 주표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두 번째 부표본인 50세 이상 59세 미만의 기초통계량은 <표 1>의 (5), (6)과 같다. 50세 이상 59세 미만으로 표본을 한정하는 경우 평균연령이 55세로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 경제활동 및 경제수준, 교육정도 등에서 주표본과 차이를 보였다. 부표본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는 84%로, 주표본이나 60세 이상 부표본의 평균인 17~24%보다 현저히 높았다. 하지만 근로소득(1%)보다는 사업소득(82%)이 있는 비중이 높은 것은 주표본의 경우와 같았다. 표본의 평균 고등학교 졸업자는 73%이며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도 16%로 교육수준 또한 더 높은 것으로 나

<표 1> 기초통계량

(단위: 만원, 명, 시간)

구분	주표본		부표본			
	2013년도 기준 50세 이상 (1963년 이전 출생자)		2013년도 기준 60세 이상 (1953년 이전 출생자)		2016년도 기준 50세 이상 59세 미만 (1957~1966년도 출생자)	
	평균 (1)	표준편차 (2)	평균 (3)	표준편차 (4)	평균 (5)	표준편차 (6)
소득활동 유무	0.24	0.43	0.17	0.37	0.84	0.37
총급여액 ¹⁾ 유무	0.15	0.35	0.10	0.30	0.55	0.50
근로소득 유무	0.01	0.10	0.01	0.09	0.01	0.11
사업소득 유무	0.24	0.42	0.16	0.37	0.83	0.38
평균 주중 근로시간	22.24	5.73	21.99	6.22	22.86	4.23
나이	74.43	9.79	76.99	7.73	54.96	4.28
고등학교 졸업 여부	0.22	0.41	0.16	0.37	0.73	0.44
대학교 졸업 여부	0.06	0.23	0.05	0.21	0.16	0.36
총급여액	546.82	4,408.15	155.90	1,008.37	3,731.91	10,348.31
근로소득 있음	0.01	0.10	0.01	0.09	0.01	0.11
연간 근로소득 ²⁾	1.91	26.11	1.58	22.14	2.65	36.46
연간 근로소득 (소득이 있는 경우) ³⁾	193.76	180.30	174.69	156.48	221.90	269.89
사업소득(매출액) 있음	0.23	0.42	0.16	0.37	0.82	0.38
연간 사업소득(매출액) ²⁾	790.64	4,652.88	254.38	1,150.26	5,078.21	10,779.87
연간 사업소득 (소득이 있는 경우) ³⁾	1,263.12	1,253.90	757.07	713.44	2,131	1,765.25
비근로소득	116.35	134.52	97.90	115.68	244.03	171.75
자산	2,371.69	14,539.29	2,191.21	14,880.00	4,299.30	12,766.54
특별시 및 광역시 거주	0.43	0.49	0.41	0.49	0.61	0.49
가구원 수	1.27	0.60	1.22	0.56	1.67	0.76
Eligibility _{it}	0.42	0.49	0.42	0.49	0.46	0.50
관측 수	4,859		4,195		586	

주: 기초통계량은 총급여액 유무 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Eligibility_{it} 변수를 설명변수로 한 회귀분석에 사용된 표본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1) 총급여액 산정 시 근로장려금이 2015년부터 자영업자에게도 가능해진 제도적 변화를 반영하였다. 즉 총급여액은 2015년 이전에는 근로소득을 2015년부터는 근로 및 사업소득의 합을 의미한다. 데이터의 한계로 종교인소득은 포함하지 않았다.

2) 각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여 계산되었다.

3) 각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하였을 경우의 평균을 의미한다.

출처: 저자 작성

타났다.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총급여액(3,732만원), 연간 사업소득(5,078만원) 모두 주표본보다 현저히 높았으며, 비근로소득(244만원), 자산(4,299만원) 또한 높은 수준이었다. 특별시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비중은 61%이며, 평균 가구원 수는 1.67명으로 주표본보다 다소 많았으나 여전히 1인 가구의 비중(51%)이 높았다.¹⁷⁾

기초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주표본과 60세 이상 부표본은 특성이 비슷하여 회귀분석 결과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50세 이상 59세 미만 부표본의 경우 다른 함의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부표본을 50세 이상 59세 미만으로 한정할 경우 평균연령이 55세로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 경제수준 및 교육수준 등이 주표본보다 현저히 높았다.

2. 회귀분석

본고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외생적인 변화를 반영한 *Eligibility_{it}* 변수를 사용한 다음과 같은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Y_{it} = \alpha + \beta_1 X_{it} + \beta_2 Eligibility_{it} + \gamma_i + \delta_t + \varepsilon_{it} \quad \text{식 (1)}$$

종속변수인 *Y_{it}*는 경제활동 여부(소득활동 유무, 총급여액 유무, 근로소득 유무, 사업소득 유무)를 나타내는 이항변수와 월평균 근로일수를 나타내는 연속변수를 사용하였다. 소득활동 유무는 소득, 이익, 봉급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고용되거나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주간에 1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총급여액 유무는 2015년도 이전에는 근로소득, 2015년도부터는 근로 및 사업소득의 유무를 의미한다. 이는 2015년도 이후부터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해진 제도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본래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및 기타소득을 포함하나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유무만을 고려하였다. 근로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와 사업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를 구분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유무와 사업소득 유무를 나누어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경제활동 유무와 더불어 경제활동 참여 정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월평균 근로일수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가구주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나이와 나이의 제곱, 특별시 및 광역시 거주 여부, 순자산액 및 순자산액의 제곱, 비근로소득을 통제하였다.

실제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를 나타내는 이항변수(*DEITC_{it}*)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할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행동변화가 반영되어 추정치에 편의

17)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하는데, 이는 1인 가구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예를 들어, 만 18세 이상의 자녀(소득 100만원 이하)와 함께 사는 경우는 1인 가구는 아니지만 여전히 단독가구로 분류된다.

회귀분석 결과
수급가능변수(*Eligibility_{it}*)를
사용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되었으나
강건성 분석을
통과하지 못해,
근로장려세제가 준고령자 및
고령자 단독 가구주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뚜렷한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재정패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급여부변수(*DEITC_{it}*)의 경우 응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수급여부변수를 사용한 분석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편의 통제 및 한계점 극복을 위하여 본고에서는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대신 외생적 정책 변화에 따라서만 변화하는 수급가능변수(*Eligibility_{it}*)를 사용한 고정모형으로 분석을 해보았다. *Eligibility_{it}* 변수는 가구주 *i*의 *t*연도에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에 '1'이 되는 이항변수로 외생적 정책 변화만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하지만 수급가능변수(*Eligibility_{it}*)를 사용한 회귀분석에도 단점이 있다. 수급가능변수를 사용한 회귀분석은 편의를 줄여 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급가능변수와 실제 수급 여부와의 관련성이 떨어진다면 분석의 신뢰성 또한 낮아질 수 있다. 즉 의도된 처치효과(Intention to Treat, ITT)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급을 받지 않은 사람이 받은 사람으로, 혹은 수급을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될 경우 분석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급가능변수(*Eligibility_{it}*)를 실제 수급 여부(*DEITC_{it}*)에 대한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로 사용한 강건성 분석을 추가로 시행해 보았다. 본 절에서는 먼저 수급가능변수(*Eligibility_{it}*)를 사용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이어서 수급가능변수(*Eligibility_{it}*)를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로 사용한 강건성 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결과를 해석할 때에도 이 두 가지 모형의 결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해석한다.

회귀분석 결과 수급가능변수(*Eligibility_{it}*)를 사용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되었으나 강건성 분석을 통과하지 못하여, 근로장려세제가 준고령자 및 고령자 단독가구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뚜렷한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먼저, 수급가능 변수(*Eligibility_{it}*)를 사용하여 회귀식 (1)을 분석한 결과는 <표 2~4>와 같다. <표 2>는 주표본인 50세 이상 단독가구 가구주의 경제활동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정책의 외생적인 변화로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할 때, 가구주의 총급여액 유무가 25%가량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소득의 존재 여부에 유의미한 증가(14%)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부표본을 사용한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60세 이상 단독가구 가구주의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할 때 총급여액 유무가 17%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존재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표 3> 참조). 반면 50세 이상 59세 미만인 단독가구 가구주의

**<표 2> 근로장려금 자격 여부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013년도 기준 50세 이상(1963년 이전 출생자) 대상**

구분	소득활동 유무 (1)	총급여액 유무 (2)	근로소득 유무 (3)	사업소득 유무 (4)	월평균 근로일수 (5)
<i>Eligibility_{it}</i>	0.1034 (0.0661)	0.2502*** (0.0476)	0.0078 (0.0117)	0.1437* (0.0781)	0.5418 (1.1494)
비근로소득	0.0318*** (0.0119)	-0.0079 (0.0125)	-0.0400*** (0.0100)	0.0450*** (0.0112)	0.0067 (0.3614)
나이	-0.0142 (0.0137)	0.2060*** (0.0194)	0.0021 (0.0044)	-0.0261* (0.0145)	1.0505** (0.4415)
나이의 제곱	-0.0001 (0.0001)	-0.0014*** (0.0001)	-0.0000 (0.0000)	-0.0000 (0.0001)	-0.0103*** (0.0032)
자산	-0.0001 (0.0021)	0.0045* (0.0027)	-0.0011 (0.0012)	0.0018 (0.0031)	0.0269 (0.1088)
특별시 및 도시 거주 여부	0.0380 (0.0450)	0.0284 (0.0360)	0.0346** (0.0169)	0.0503 (0.0504)	1.5856 (1.4016)
상수	1.4741** (0.6328)	-7.2616*** (0.7583)	0.0513 (0.1824)	2.0336*** (0.6932)	-2.1277 (15.9119)
개인 고정 효과	0	0	0	0	0
연도 더미	0	0	0	0	0
R-squared	0.0399	0.2564	0.0480	0.0585	0.0768
관측 수(전체)	4,881	4,859	4,881	4,881	1,199
관측 수(개인)	748	747	748	748	267

주: 1. 분석을 위하여 2011~2021년도 제4~14차 「재정패널」을 사용하였다. 표본은 가구의 경상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저소득 단독가구 중 2013년도 기준 50세 이상(1963년 이전 출생자)인 가구주이다.

2. 강건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

3. *** p < 0.01, ** p < 0.05, *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출처: 저자 작성

**<표 3> 근로장려금 자격 여부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013년도 기준 60세 이상(1953년 이전 출생자) 대상**

구분	소득활동 유무 (1)	총급여액 유무 (2)	근로소득 유무 (3)	사업소득 유무 (4)	월평균 근로일수 (5)
<i>Eligibility_{it}</i>	0.0363 (0.0688)	0.1675*** (0.0371)	0.0125 (0.0144)	0.0969 (0.0841)	-0.9910 (1.4066)
비근로소득	0.0205* (0.0118)	-0.0207 (0.0129)	-0.0455*** (0.0115)	0.0393*** (0.0114)	0.4146 (0.5040)
나이	-0.0152 (0.0186)	0.1275*** (0.0263)	-0.0014 (0.0038)	-0.0370* (0.0194)	0.5564 (0.8370)
나이의 제곱	-0.0000 (0.0001)	-0.0009*** (0.0002)	0.0000 (0.0000)	0.0001 (0.0001)	-0.0058 (0.0057)
자산	-0.0012 (0.0026)	0.0040 (0.0027)	0.0003 (0.0008)	0.0002 (0.0037)	-0.0851 (0.1876)
특별시 및 도시 거주 여부	0.0408 (0.0476)	0.0241 (0.0348)	0.0368* (0.0192)	0.0639 (0.0564)	3.8450* (2.0334)
상수	1.3000 (0.7955)	-4.5918*** (1.0067)	0.2051 (0.1521)	2.3151*** (0.8883)	10.4834 (31.4216)
개인 고정 효과	0	0	0	0	0
연도 더미	0	0	0	0	0
R-squared	0.0364	0.1240	0.0597	0.0556	0.1291
관측 수(전체)	4,202	4,195	4,202	4,202	710
관측 수(개인)	607	607	607	607	170

주: 1. 분석을 위하여 2011~2021년도 제4~14차 「재정패널」을 사용하였다. 표본은 가구의 경상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저소득 단독가구 중 2013년도 기준 60세 이상(1953년 이전 출생자)인 가구주이다.

2. 강건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

3. *** p < 0.01, ** p < 0.05, *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출처: 저자 작성

주요본인 50세 이상
단독가구 가구주의
경제활동을 분석한 결과,
정책의 외생적인 변화로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할 때
가구주의 총급여액 유무가
25%가량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가능변수를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및
수급가능 여부는
주로 60세 이상(1953년
이전 출생자)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근로장려금 자격 여부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016년도 기준 50세 이상 59세 미만(1957~1966년도 출생자)

구분	소득활동 유무 (1)	총급여액 유무 (2)	근로소득 유무 (3)	사업소득 유무 (4)	월평균 근로일수 (5)
<i>Eligibility_{it}</i>	0.1307 (0.0810)	0.2352 (0.1459)	-	0.0232 (0.0991)	1.1388 (1.6814)
비근로소득	0.0513 (0.0398)	0.0347 (0.0368)	-	0.0252 (0.0394)	-0.4454 (0.4567)
나이	0.0392 (0.0444)	0.2789*** (0.1045)	-	0.0415 (0.0452)	-2.2121** (1.0944)
나이의 제곱	-0.0005 (0.0004)	-0.0020** (0.0010)	-	-0.0005 (0.0004)	0.0182* (0.0100)
자산	0.0027 (0.0020)	0.0077 (0.0055)	-	0.0013 (0.0016)	0.0241 (0.0737)
특별시 및 도시 거주 여부	0.0767 (0.0841)	-0.0425 (0.0390)	-	-0.0297 (0.0274)	0.6924 (1.5789)
상수	0.0305 (1.2578)	-9.0720*** (2.7770)	-	-0.1643 (1.3162)	88.9576*** (29.8357)
개인 고정 효과	0	0		0	0
연도 더미	0	0		0	0
R-squared	0.1104	0.8323	-	0.0459	0.0509
관측 수(전체)	601	586	-	601	507
관측 수(개인)	131	130	-	131	99

주: 1. 분석을 위하여 2011~2021년도 제4~14차 「재정패널」을 사용하였다. 표본은 가구의 경상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저소득 단독가구 중 2013년도 기준 50세 이상 59세 미만(1957~1966년도 출생자)인 가구주이다.

2. 강건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

3. *** p < 0.01, ** p < 0.05, *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출처: 저자 작성

경우에는 수급가능 여부가 경제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수급가능변수(*Eligibility_{it}*)를 사용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및 수급가능 여부는 주로 60세 이상(1953년 이전 출생자)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급여액 유무와 사업소득 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으나, 근로소득 유무와 근로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자의 특성상 노동시장에서의 소득활동보다 사업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활동이 많고,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및 수급으로 인한 경제활동 또한 사업 및 자영업을 통한 것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수급가능변수(*Eligibility_{it}*)를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로 사용한 분석 결과는 앞선 긍정적 효과의 강건성을 지지하지 않았다. 수급가능변수와 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던 전체표본(50세 이상 단독가구)과 첫 번째 부표본(60세 이상 단독가구)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 6>과 같다.

도구변수를 사용한 강건성 분석 결과 실제 수급여부변수(*Eligibility_{it}*)와 수급가능변수(*Eligibility_{it}*) 간의 관계성이 크지 않았으며, 유의한 긍정적 효과 또

한 확인할 수 없었다. 즉 수급가능변수(*Eligibility_{it}*)를 사용한 회귀분석은 강건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가능변수(*Eligibility_{it}*)의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한 긍정적인 효과를 모두 근로장려금 수급으로 인한 효과로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며, 좀 더 정확하게 수급 여부를 보여주는 변수를 사용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구변수를 사용한 강건성 분석 결과 유의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급가능변수의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한 긍정적인 효과를 모두 근로장려금 수급의 효과로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표 5> 도구변수를 사용한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013년도 기준 50세 이상(1963년 이전 출생자) 대상

구분	소득활동 유무 (1)	총급여액 유무 (2)	근로소득 유무 (3)	사업소득 유무 (4)	월평균 근로일수 (5)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instrumented)	11.0602 (10.7839)	29.2302 (28.6040)	0.8296 (1.6925)	15.3654 (14.3160)	16.9270 (60.3534)
개인 고정 효과	0	0	0	0	0
연도 더미	0	0	0	0	0
가구주 특성변수	0	0	0	0	0
Cragg-Donald Wald F statistic	1.209	1.073	1.209	1.209	0.865
R-squared	-7.1703	-29.5722	-0.3120	-15.7003	-0.0224
관측 수(개인)	676	675	676	676	186
관측 수(전체)	4,809	4,787	4,809	4,809	1,118

- 주: 1. 분석을 위하여 2011~2021년도 제4~14차 「재정패널」을 사용하였다. 표본은 가구의 경상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저소득 단독가구 중 2013년도 기준 50세 이상 59세 미만(1957~1966년도 출생자)인 가구주이다.
- 2. 가구주 특성변수는 비근로소득, 나이, 나이의 제곱, 자산, 특별시 및 도시 거주 여부이다.
- 3. *** p < 0.01, ** p < 0.05, *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출처: 저자 작성

<표 6> 도구변수를 사용한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013년도 기준 60세 이상(1953년 이전 출생자) 대상

구분	소득활동 유무 (1)	총급여액 유무 (2)	근로소득 유무 (3)	사업소득 유무 (4)	월평균 근로일수 (5)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instrumented)	3.1266 (4.3533)	14.3574 (12.5452)	1.0741 (1.6531)	8.3441 (7.6257)	-14.7266 (36.5038)
개인 고정 효과	0	0	0	0	0
연도 더미	0	0	0	0	0
가구주 특성변수	0	0	0	0	0
Cragg-Donald Wald F statistic	1.419	1.428	1.419	1.419	1.809
R-squared	-0.5760	-10.8444	-0.5554	-4.6380	0.0216
관측 수(개인)	564	564	564	564	114
관측 수(전체)	4,159	4,152	4,159	4,159	654

- 주: 1. 분석을 위하여 2011~2021년도 제4~14차 「재정패널」을 사용하였다. 표본은 가구의 경상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저소득 단독가구 중 2013년도 기준 50세 이상 59세 미만(1957~1966년도 출생자)인 가구주이다.
- 2. 가구주 특성변수는 비근로소득, 나이, 나이의 제곱, 자산, 특별시 및 도시 거주 여부이다.
- 3. *** p < 0.01, ** p < 0.05, *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출처: 저자 작성

근로장려세제 수급자 중 50대 이상의 준고령자 및 고령자 단독가구 가구주의 경제활동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연한 고령화라는 과제에서 조세제도의 역할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V. 요약 및 결론

2009년도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된 이래로 제도의 확대와 함께 수급요건 또한 크게 변화하였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수급 가능한 한도 기준이 상향되면서 완화되었다. 배우자·부양자녀 유무 요건은 2009년도에는 부양자녀가 1명 이상, 2012년도부터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3년도부터는 부양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도 만 60세 이상인 경우라면 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 단독가구에 대한 연령요건(2019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대상요건(2014년), 주택요건(2017년)은 세법개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그에 따라 수급가구 구성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주된 변화는 수급가구 중에서 단독가구의 비중, 50세 이상 가구주의 비중, 그리고 무자녀가구의 비중이 증가한 점이다. 이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가구에만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자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였던 제도 도입 초반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최근 2019년도부터 전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 단독가구 중에서 연령이 50세 이상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 단독가구 가구주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고령층의 노동공급에 관한 연구는 표본의 일부나 이질성 분석의 일부로 이정우·홍우영·김두언(2022), 박지혜·이정민(2018) 등에서 다루어진 바 있으나, 장기간(2011~2020년)의 제도 변화로 인한 고령자 가구주의 노동공급 변화를 다룬 연구는 본고가 처음이다.


효과분석을 위해서, 「재정패널」 2010~2020년도 자료를 활용하고 외생적인 수급요건의 변화를 변수화($Eligibility_{it}$)하여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하고, 이를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를 활용하여 강건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수급가능변수($Eligibility_{it}$)를 사용한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되었으나, 강건성 분석을 통과하지 못하여 근로장려세제가 준고령자 및 고령자 단독가구주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뚜렷한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고정효과 모형을 통한 추정은 50세 이상 단독가구 가구주가 근로장려금의 수급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주보다 총급여액이 존재할 확률(25%)이 높았고, 사업소득이 존재할 확률(14%)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본을 사용한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서 60세 이

상 단독가구 가구주의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할 때, 총급여액이 존재할 확률(17%)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급가능변수를 실제 수급 여부에 대한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로 사용한 분석의 경우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50세 이상 가구주 표본과 60세 이상 단독가구주 표본에 대한 수급 여부와 수급가능변수(*Eligibility_n*) 간의 관계성이 크지 않았고, 수급자격과 경제활동 참여의 긍정적인 상관관계의 유의성도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Ⅲ장 제2절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모두 근로장려금 수급으로 인한 효과로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수급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가 풍부하게 확보된 데이터를 사용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자 중 50대 이상의 준고령자 및 고령자의 단독가구 가구주의 경제활동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고령화라는 과제에서 조세제도의 역할을 고찰해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근로장려세제가 고령층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동시에 주된 일자리로부터 은퇴한 후 임금이 급격히 하락하여 시장에서 충분한 소득을 지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전하는 역할 또한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제공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 근로장려세제가 준고령자 및 고령자 단독가구 가구주의 경제활동, 특히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재정패널」에서 사용한 저소득 고령층 표본이 풍부하지 않았으며,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 또한 많지 않았다는 점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표본에서는 근로소득자보다는 사업소득자인 경우가 많아 세제 혜택으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제도적인 측면에서 2021년 기준 단독가구(87만원)의 경우 평균 수급금액이 홑벌이(139만원)와 맞벌이(142만원) 가구에 비하여 크지 않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본고를 보완하여 근로장려세제가 준고령자 및 고령자 단독가구 가구주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분명하게 판단하려면, 풍성한 고령자 표본을 포함한 데이터나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관련 변수를 충분히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제혜택을 사용하여 고령층의 은퇴를 유도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해외의 사례들과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 및 조세제도를 비교함으로써 고령자 사회에 고령자의 민간 부문 경제활동을 장려·지원하는 방법을 고찰 및 고안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 및 조세제도와 해외의 유사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고령자의 민간 부문 경제활동을 장려·지원하는 방법을 고찰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2022. 10.
- 권성오·홍우영 『근로장려세제 확대의 경제적 효과: 노동공급과 납세행태에 미친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김문정·김빛마로, 『2019년 확대·개편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김재진·이상은·이철인, 『조세지출(근로장려세제) 종합 심층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남재량, 『주된일자리 이탈과 빈곤』, Research Brief No.1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포용성장연구단, 2020.
- 박지혜·이정민, 『근로장려세제가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 『노동경제논집』, 제41권 3호, 2018, pp. 1~59.
- 신우리·송헌재,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의 효과 분석』, 『응용경제』, 제20권 제2호, 2018, pp. 107~138.
- 이대웅·권기현·문상호,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 성향점수 매칭(PSM) 이중 삼중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2호, 2015. 6., pp. 27~56.
- 이정우·홍우영·김두언, 『근로장려세제(EITC)가 단독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령대별 효과를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2022. 9.
- 전영준,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의욕 증진효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접근』, 『한국재정학회』, 제1권 4호, 2008, pp. 1~43.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3, 검색일자: 2022. 12. 24.
- 통계청 누리집, 『2020 고령자 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5322, 검색일자: 2022. 12. 24.
- 통계청,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ByNumber/PopulationByNumberMain.do?mb=Y&menuId=M_1_5&themald=E01, 검색일자: 2022. 12. 24.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각 연도.
- 『한겨레』, 『‘고령사회’ 진입한 한국…일본보다 7년 빨라』, 2018. 8. 27.,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9471.html, 검색일자: 2022. 12. 24.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 미국 - 바이든 대통령, 억만장자에 대한 최저한세 부과 및 기업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금 4배 인상 제안 외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바이든 대통령, 억만장자에 대한 최저한세 부과 및 기업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금 4배 인상 제안]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2월 7일 국정연설에서 적자를 줄이기 위해 억만장자에 대한 최저한세를 신설하고 기업주식 환매에 대한 세금을 4배 인상할 것을 제안함^{1), 2), 3)}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구가 그 외 근로 가구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현재의 세법 구조를 지적하며 억만장자 최저한세 제안에 대한 승인을 미 의회에 촉구함
 - 바이든 대통령은 2010년에서 2018년 기간 동안 소득 상위 400가구의 평균 연방 개인 소득세율이 8.2%로 추정된다고 설명하며 이는 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7만 5,000가구에 대한 2021년 평균 연방 개인소득세율인 26%보다도 훨씬 낮다는 점을 지적함⁴⁾

-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1%에서 4배 인상할 것을 제안함

-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에너지 기업들이 국내 생산에는 소액만을 투자하고 대신 자사주를 매입함으로써 기업 주주들이 부를 축적하게 된 것을 제안의 배경으로 설명함

- 2022년 8월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는 상장 기업의 자사주 매입액이 연간 100만달러를 넘는 경우 자사주 매입 금액에 대해 1%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포함되었음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과세의 불공정성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익이 10억달러 이상인 대기업에 부과하는 최저한세의 역할을 강조함

-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기업 중 55개가 비과세 및 각종 공제를 원인으로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음⁵⁾을 설명함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는 최근 3개 사업

1) THE WHITE HOUSE, "Remarks of President Joe Biden – State of the Union Address as Prepared for Delivery," 2023. 2. 7.,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3/02/07/remarks-of-president-joe-biden-state-of-the-union-address-as-prepared-for-delivery/>, 검색일자: 2023. 2. 22.

2) IBFD, "President Biden Proposes Billionaire Minimum Tax, Quadrupling Corporate Stock Buyback Tax in State of the Union Address," 2023. 2.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2-08_us_4.html, 검색일자: 2023. 2. 22.

3) THE WHITE HOUSE, "FACT SHEET: The Biden Economic Plan Is Working," 2023. 2. 6.,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2/06/fact-sheet-the-biden-economic-plan-is-working/>, 검색일자: 2023. 2. 22.

4) THE WHITE HOUSE, "What Is the Average Federal Individual Income Tax Rate on the Wealthiest Americans?," 2021. 9. 23., <https://www.whitehouse.gov/cea/written-materials/2021/09/23/what-is-the-average-federal-individual-income-tax-rate-on-the-wealthiest-americans/>, 검색일자: 2023. 2. 28.

5) ITEP, "55 Corporations Paid \$0 in Federal Taxes on 2020 Profits," 2021. 4. 2., <https://itep.org/55-profitable-corporations-zero-corporate-tax/>, 검색일자: 2023. 2. 28.

연도 평균 소득이 10억달러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15%의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수집 및 조사: 이나현 변호사>



영국

[강제보고규정 의회 통과]

- 2023년 1월 17일, 강제보고규정(Mandatory Disclosure Rules, MDR)이 영국 의회를 통과함⁶⁾
 - 이에 따라 영국의 MDR 규정(International Tax Enforcement(Disclosable Arrangements) Regulations 2023)은 2023년 3월 28일 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기존의 DAC6 규정을 대체하게 됨
- 2023년 3월 28일 이후 체결되는 약정은 DAC6 규정이 아닌 MDR 규정에 따라 영국 국세청(HMRC)에 보고되어야 함⁷⁾
 - 역외 약정(cross-border arrangement)이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⁸⁾ 관련 의무를 회피하는 거래이거나 불투명한 역외구조(Opaque Offshore Structure)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되어야 함

- 단, 해당 약정이 이미 보고된 적이 있거나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이 적용되는 경우 보고의무에서 면제됨
- 보고대상 약정이 이용가능하거나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되어야 함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벨기에

[부가가치세 절차 및 징수 현대화 법안 발표]

- 벨기에 정부는 2023년 2월 7일, 부가가치세 절차 및 징수 현대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⁹⁾
 - ‘부가가치세 저축계좌(Compte-provisions TVA)’를 신설함
 -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납부액을 초과하고 납세자가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저축계좌에 저장됨

6) GOV.UK, “Mandatory Disclosure Rules (MDR),” Policy Paper, 2023. 1. 1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andatory-disclosure-rules/mandatory-disclosure-rules-mdr>, 검색일자: 2023. 2. 20.

7) IBFD, “United Kingdom-Tax Authority Clarifies Mandatory Reporting of Cross-Border Arrangements,” 2023. 2.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2-06_uk_1.html, 검색일자: 2023. 2. 20.

8)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이란 OECD가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국제적 납세의무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자동정보교환 표준모델임

9) DE KAMER.BE, “PROJET DE LOI - visant à moderniser la chaîne TVA et la perception des créances fiscales et non fiscales au sein du SPF Finance,” 2023. 2. 7., <https://www.dekamer.be/flwb/pdf/55/3128/55K3128001.pdf> 검색일자: 2023. 2. 16.; IBFD, “Government Submits Bill to Modernize VAT Procedures, Collection,” 2023. 2.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2-08_be_1.html, 검색일자: 2023. 2. 16.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납세자는 국세청 개인 계정에 접속하여 특별한 공식 절차 없이 즉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음
-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신고 기한으로부터 3개월 후 '추정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 처분 금액은 이전 12개월 동안의 신고납부액의 최고 금액 또는 동일한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경우 2,100유로¹⁰⁾임
- 납세자는 '추정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음
-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과세관청은 처분 금액이 정당한지 심사 후 결정 처분할 수 있고, 이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이의신청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해당 처분이 확정적으로 결정된다는 통지를 받게 되며, 처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부터 효력이 있음
- 서류 미제출 시 과세관청의 처분 및 부가가치세 환급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 납세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추정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

- 과세관청의 환급액 지급 기한, 납부 예정액에 대한 환급액 공제 등의 내용을 신설함
- 납세자가 환급을 신청한 경우 신고 기한으로부터 3개월 내에 환급되어야 하지만, 이전 6개월 동안 모든 부가가치세 신고가 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
- 환급액은 과세관청의 재량에 따라 납부 예정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① 환급액이 확정되지 않고, ② 부정확한 신고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며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③ 요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독일

[사회복지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2022년 2월 14일 연방재무부는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법령(UStAE) 개정을 발표함^{11), 12)}
- 새로 개정된 법령안에는 공법에 따른 기관 또는 체계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10) 2023년 2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90만원임

11) 독일 연방재무부, "Umsatzsteuerbefreiung für eng mit der Sozialfürsorge und der sozialen Sicherheit verbundene Leistungen," 2023. 2. 1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MF_Schreiben/Steuerarten/Umsatzsteuer/Umsatzsteuer-Anwendungserlass/2023-02-14-umsatzsteuerbefreiung-fuer-eng-mit-der-sozialfuersorge-und-der-sozialen-sicherheit-verbundene-leistungen.html, 검색일자: 2023. 2. 21.

12) '부가가치세법(Umsatzsteuergesetz(UStG))', § 4 Steuerbefreiungen bei Lieferungen und sonstigen Leistungen, 검색일자: 2023. 2. 27.

만 면세하여 「부가가치세법(UStG)」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

- 관련 조항(제18조)의 ‘복지시설(Wohlfahrtseinrichtungen)’의 명칭을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과 밀접한 서비스(Eng mit der Sozialfürsorge und der sozialen Sicherheit verbundene Leistungen)’로 개정하며 면제 범위를 확장 및 구체화함

- 「부가가치세법(UStG)」의 ‘사회보장과 밀접한 서비스’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환경 및 자연보호, 문화 및 기념물 보존, 스포츠 등은 면세 대상이 아님
- 식사배달 서비스(Menüservices),¹³⁾ 법률 서비스, 기타 일반적인 관리 서비스는 사회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음
-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장소에서 필요로 인해 정액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노숙자를 위한 보호소 운영 등은 사회복지장 관련 서비스에 해당함

<자료수집 및 정리: 유승혜 연구원>

[연구기관 부가가치세 및 매입세액 공제 기준 설립]

- 2023년 2월 7일, 연방 재무부는 연구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통일된 규정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적용 법령(UStAE) 조정을 발표함¹⁴⁾

- (배경) 2021년 11월 30일, 연방 감사원은 연구기관이 상업적 및 비상업적 부분에 따라 어느 정도 매입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세관청에서 연구기관의 매입세액 공제를 일관적이지 않게 평가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기준의 통일화를 요구함¹⁵⁾
- 이에 2023년 2월 7일, 연방재무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UStAE)」에 연구기관의 기업지위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연구기관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을 통일하고자 함
 - (매입세액 공제) 기존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부분(비상업적 부분)을 별도로 정하여 과세하는 대신 총사업비용을 입증한 것을 바탕으로 과세관청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함
 - (기업적 영역) 연구기관 내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정해진 영역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비상업적으로 인정하는 등 상업적 영역과 비상업적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도입함

<자료수집 및 정리: 유승혜 연구원>

13) 식사배달 서비스(Menüservices)는 노인 및 환자를 주요로 하는 식사배달 서비스임

14) 독일연방재무부, “BMF-Schreiben vom 7. Februar 2023 zur Gewährung von Forschungszulage nach dem Gesetz zur steuerlichen Förderung von Forschung und Entwicklung (Forschungszulagengesetz – FZulG),” 2023. 2. 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MF_Schreiben/Weitere_Steuerthemen/Forschungszulagen/2023-02-07-gewaehrung-von-forschungszulage-nach-dem-gesetz-zur-steuerlichen-foerderung-von-forschung-und-entwicklung.html, 검색일자: 2023. 2. 20.

15) Bundesrechnungshof, “Steuerausfälle verhindern – Vorsteuerabzug bei Forschungseinrichtungen endlich einheitlich regeln,” 2021. 11. 30., <https://www.bundesrechnungshof.de/SharedDocs/Downloads/DE/Berichte/2021/einheitliche-regelung-vorsteuerabzug-forschungseinrichtungen-volltext.html>, 검색일자: 2023. 3. 6.



이탈리아

[미결 조세 채무 및 소송 해결을 위한 절차 도입]

- 이탈리아 과세 당국은 2023년 1월, 예산법을 통해 납세자의 미결 조세 채무 및 소송 해결과 관련한 새로운 절차를 도입함^{16), 17)}
- 납세자는 일정 금액 납부를 통해 기존에 발생한 위반사항이나 세금신고서를 시정 및 정정할 수 있음
 - 2023년 3월 31일부터 가산세액이나 이자, 벌금 등을 납부(일시불 혹은 최대 8분기 분할 납부)하여 제출한 세금신고서를 정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세무조사가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본 절차를 사용할 수 없음
 - 또한 적격 납세자가 2022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기준 및 납세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 2023년 3월 31일까지 관련 회계연도에 대해 각 200유로를 납부(일시불 혹은 최대 2년 분할 납부)하는 경우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음
- 특정 조건에 따라 경감된 과태료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관련 납부세액과 이자, 과태료에 대한 분할 납부가 허용됨
 - 2019년 및 2020년, 2021년 회계연도에 세금

신고 자동 확인에 기인하여 발생한 조세 채무와 관련하여, 특정 조건에 따라 과태료율이 최소 수준인 3%로 감면되고 관련 납부액에 대해 20분기 분할 납부가 허용됨

- 또한 항소 대기 중인 2023년 3월 31일 이전에 통지된 평가통지서, 조정통지서 및 세금 회수 조치에 대해 최소 과태료의 1/18로 감면된 과태료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관련 납부액에 대해 20분기의 분할 납부가 허용됨
- 2023년 4월 30일까지 절차를 신청한 적격 납세자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사이 발생한 미납 세금에 대해 연체이자, 과태료 또는 징수수수료 없이 이를 청산할 수 있음
 - 이때 납세자는 2023년 7월 31일까지 미납 세금을 납부(일시불 혹은 18분기 분할 납부)해야 함
- 납세자가 분쟁가액과 법원의 수준에 따른 일정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계류 중인 조세 소송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음
 - 조세 소송의 합의를 위해 요구되는 금액은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의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됨
 - 1심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의 경우 분쟁 가치의 90%
 - 1심 법원에서 납세자가 승소하고 2심 법원

16) IBFD, "Italy - Tax Authorities Clarify Newly Introduced Settlement Procedures for Pending Tax Liabilities and Litigations," 2023. 2.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02-02_it_1, 검색일자: 2023. 2. 20.
 17) IBFD, "Italy - Budget Law for 2023: Italy Introduces Settlement Procedures for Pending Tax Liabilities and Litigations," 2023. 1. 18.,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3-01-18_it_6, 검색일자: 2023. 2. 20.

에 계류 중인 소송의 경우 분쟁 가치의 40%
 - 2심 법원에서 납세자가 승소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의 경우 분쟁 가치의 15%
 - 납세자가 1심과 2심 모두에서 승소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의 경우 분쟁 금액의 5%

- 소송 절차 중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지불해야 할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나, 이미 납부한 금액이 지불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불되지 않음
- 본 절차의 혜택을 받으려면 보류 중인 각 소송에 세부 요청을 제출한 뒤 2023년 6월 30일 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금액이 1,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 최대 20분기 분할 납부가 허용됨
 - 이때 세무 당국은 2024년 7월 31일까지 분쟁에 대한 합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통지 후 60일 이내에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음

- 기한 내에 사법적인 해결 혹은 합의를 통해 종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으며, 특정 과거 기한에 징수가 요청되었던 1,000유로 이하의 조세 채무가 소멸됨
 - 현재 계류 중인 조세 소송이 2023년 6월 30일 까지 다음과 같이 종결되는 경우, 과태료가 대상 금액의 1/18인 최소 수준으로 감면됨

- 1심 및 2심에서 계류 중인 조세 소송이 사법적으로 종결되는 경우
 -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조세 소송에 세무 당국과의 합의를 통해 종결되는 경우

- 200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대리기관에 징수가 요청되었던 1,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조세 채무는 자동으로 소멸함

- 상기한 절차들은 수입 부가가치세(import VAT) 및 국가 지원 회수액과 관련된 EU의 자체 자원에 대한 조세 채무 및 소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핀란드

[MLI 유보철회 및 자본이득 대상 소득 유형 확대 법안 비준]

- 핀란드 대통령은 2023년 2월 17일, 'BEPS 방지 다자협약(MLI)' 제9조 제6항 제a호에 따라 적용한 유보를 철회하는 법안을 비준함¹⁸⁾
 - 핀란드는 기존에 MLI 제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유보하였으나, 이를 철회하는 법안을 비준함으로써 MLI 제9조 제4항을 적용받

18) News IBFD, "President Ratifies Law Withdrawing MLI Reservation and Extending Income from Finland to Include Capital Gains on Disposal of Indirect Holding of Real Estate," 2023. 2.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2-17_fi_1.html, 검색일자: 2023. 2. 20.

게 되며, 법안은 2023년 3월 1일부터 발효됨¹⁹⁾

- MLI 제9조 제6항 제a호에 따르면 각국은 MLI 제9조 제1항(주식의 양도로 인한 자본 이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함

- MLI 제9조 제4항은 적용 조세조약(Covered Tax Agreement)의 목적상 체결 관할 당국의 거주자에게 과세가능한 자본이득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법안은 소득세법(Tuloverolaki, TVL) Section 10을 개정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 소득의 유형을 재규정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부동산 간접 보유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도 이에 포함됨

-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용익물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양도

- 양도일 이전 365일의 기간 중 파트너십 또는 신탁에 대한 지분과 같은 유사지분을 통해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 가치의 50% 이상을 간접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유사지분의 양도

<자료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중국

[주식 관련 개인소득세 혜택 연장]

- 중국은 2023년 1월 16일, 「개인소득세 우대혜택 연장에 관한 공고(关于延续实施有关个人所得税优惠政策的公告)」(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3년 제2호)를 발표함^{20), 21)}

- 해당 우대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상장주식의 인센티브에 대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함²²⁾

- 스톡옵션(stock options), 주식평가보상(stock appreciation), 제한부 주식(restricted shares) 등에서 인센티브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분리 과세하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함

- 또한 중국 내 개인투자자가 중국 및 홍콩의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할 경우 개인소득세를 면제함²³⁾

- 후강통(沪港通, 상하이와 홍콩 거래소 간 교차거래)이나 선강통(深港通, 선전과 홍콩 거

19) OECD,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EPS,” <https://www.oecd.org/tax/treaties/multilateral-convention-to-implement-tax-treaty-related-measures-to-prevent-beps.htm>, 검색일자: 2023. 3. 14.

20) 중국 세무국, 财政部 税务总局关于延续实施有关个人所得税优惠政策的公告(개인소득세 우대혜택 연장 공고), 2023. 1. 16.,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363/c5183687/content.html>, 검색일자: 2023. 2. 22.

21) IBFD, “China Further Extends Two Individual Income Tax Incentives to 31 December 2023,” 2023. 1. 1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1-18_cn_1.html, 검색일자: 2023. 2. 22.

22) IBFD-Tax Research Platform, “China(People’s Rep.)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 1.3.5.1. Stock option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cn_s_1.3.%23ita_cn_s_1.3., 검색일자: 2023. 3. 2.

23) IBFD-Tax Research Platform, “China(People’s Rep.)-Individual Taxation-1.Individual Income Tax-1.6. Capital gain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b_cn_s_1.3.%23gthb_cn_s_1.6., 검색일자: 2023. 3. 2.

래소 간 교차거래)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양도소득을 면제함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charge)은 37%에서 25%로 감소함

- 표준 공제가 급여 및 연금 수급자 납세자에게 확장됨
- 공무원이 아닌 근로소득자의 퇴직금 면세 한도가 250만루피³⁰⁾로 늘어남



인도

[2023/24 예산안 발표]

■ 2023년 2월 1일, 인도 재무장관은 의회에 연합 예산 2023/24를 발표함²⁴⁾

■ 해당 예산안에 의해 개인 과세 관련 세율 정책이 변경되며, 이에 따라 세율 및 면제 한도, 환급 한도가 변경되고, 표준 공제와 퇴직금 관련 정책이 변경됨

- 「재정법 2020」에 의해 도입된 new regime이 개인 및 HUF에 대한 기본 제도가 되어 과세 구간이 7개에서 5개로 줄어들고, 소득세 면제 한도는 25만루피²⁵⁾에서 30만루피²⁶⁾로, 소득세 환급 한도는 50만루피²⁷⁾에서 70만루피²⁸⁾로 증가함
- 새 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5,000만루피²⁹⁾ 이상의 소득에 대한 최고 부가세율(sur-

<표 1> 기존 조세 체계하에서의 세율

(단위: %)

소득 범위	세율(누진과세)
25만루피 이하	비과세
25만루피 초과 ~ 50만루피 이하	5
50만루피 초과 ~ 75만루피 이하	10
75만루피 초과 ~ 100만루피 이하	15
100만루피 초과 ~ 125만루피 이하	20
125만루피 초과 ~ 150만루피 이하	25
150만루피 초과	30

출처: Dr. H.c Mehrotra, Dr. S.p. Goyal, *Income Tax Law And Accounts, Sahitya Bhawan Publications*, 61st edition, 2020-21, p. 482.

<표 2> 2023년 개정된 조세 체계하에서의 세율

(단위: %)

소득 범위	세율(누진과세)
30만루피 이하	비과세
30만루피 초과 ~ 60만루피 이하	5
60만루피 초과 ~ 90만루피 이하	10
90만루피 초과 ~ 120만루피 이하	15
120만루피 초과 ~ 150만루피 이하	20
150만루피 초과	30

출처: HDFC BANK, "Comparison Of New Tax Regime Vs Old Tax Regime," <https://www.hdfcbank.com/personal/resources/learning-centre/pay/difference-between-new-tax-regime-vs-old-tax-regime>, 검색일자: 2023. 3. 7.

24) IBFD, "India to Further Simplify Individual Income Tax Regime, Increase Tax Exempt Limit in Union Budget 2023," 2023. 2.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2-01_in_1.html, 검색일자: 2023. 2. 15.

25) 2023년 2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6만 3,771원임

26) 2023년 2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75만 6,525원임

27) 2023년 2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92만 6,215원임

28) 2023년 2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09만 6,701원임

29) 2023년 2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억 9,224만 7,729원임

30) 2023년 2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63만 1,077원임

<표 3> 개인의 부가세

(단위: %)

과세표준	부가세	
	개정 전	개정 후
500만 루피 미만	0	0
500만루피 이상 ~ 1,000만루피 미만	10	10
1,000만루피 이상 ~ 2,000만루피 미만	15	15
2,000만루피 이상 ~ 5,000만루피 미만	25	25
5,000만루피 이상	37	

출처: Dr. H.c. Mehrotra, Dr. S.p. Goyal, *Income Tax Law And Accounts, Sahitya Bhawan Publications*, 61st edition, 2020-21, p. 481. 및 저자 작성

■ 산업과 관련하여서는 협동조합의 법인세 혜택이 2024년 3월 31일까지 설립되는 신규 협동조합으로 확대되며 스타트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는 1년 연장됨

- 협동조합의 경우 15%의 법인세 혜택이 2024년 3월 31일까지 제조를 시작하는 신규 협동조합으로 확대됨
- 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스타트업의 법인 설립일은 1년 연장됨

■ 간접세와 관련하여 휴대폰 생산 등 수입품에 대한 관세 감면이 도입 및 연장되고, 은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인상됨

- 휴대폰 생산에 필요한 부품 및 투입물 수입 면제와 같은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및 감면이 시행되며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세 면제가 1년 연장됨
- 실버 바 및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인상됨

<자료수집 및 정리: 권순오 세무사>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시행 개정 규정 발표]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1월 19일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이행 규정을 발표함³¹⁾

- 소득세법 시행 개정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과세 지침 및 사업소득과 관련한 소득세 규칙, 공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칙을 포함함
 - 외국인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 면제소득, 소득공제, 감가상각 등과 관련한 과세 지침을 추가함

■ 또한 해당 시행안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의료 장비 생산 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 및 관련 종사자의 원천징수 의무 면제 등과 관련한 세금 인센티브를 종료함

<자료수집 및 정리: 권순오 세무사>

 OECD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을 위한 행정 지침 발표]

■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2023년 2월 2일,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한 조세 과제 -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모델규정

31) IBFD, “Indonesia Issues Implementing Regulation for Amendments to Income Tax Law,” 2023. 1.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3-01-19_id_1.html’, 검색일자: 2023. 2. 15.

(필라 2) 행정 지침'을 발표함³²⁾

- 2022년 발표된 GloBE 모델규정은 추후 이행 관할국이 합의된 행정지침에 따라 GloBE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이에 포괄적 이행체계는 행정지침을 발표함
 - 지침의 내용은 추후 기존 주석서를 대체하여 발간될 '수정 주석서(Commentary)'에 포함될 예정이며, 포괄적 이행체계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지침을 발표할 예정임
- 행정지침은 BEPS 프로젝트 필라 2와 관련하여 각국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 GloBE 모델규정의 해석 및 적용을 명확히 함
 - GloBE 규정의 범위와 관련하여, 통화 기준 및 간주 연결 기준(deemed consolidation test)의 내용을 다루고, 국부펀드와 최종 모기업의 정의 규정, 제외 기업의 정의 등을 명확히 함
 - GloBE 소득 산정 및 조세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계상되는 그룹 내 거래, 제외 자본손익, 제외 배당, 피지배 외국법인(CFC)과 관련한 내용 등을 다룸
 - 보험투자기업에 대하여 과세분배 방식 선택 규정을 적용하고, 중간 모기업 및 부분 소유 모기업의 정의 규정에서 보험투자기업을 제외함
 - 경과 특례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 자산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 자산 이전과 유사한 거래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 장부가액 및 이연법인세 등을 다룸

- 적격소재국 추가세액(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과 관련하여 기존 주석서의 정의 규정을 범위, IIR과 UTPR의 적용, GloBE 소득·결손의 산정, 조정대상 조세, 추가세액, 행정, 경과규정 등을 다룬 전반적인 내용으로 대체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32) OECD, "International tax reform: OECD releases technical guidance for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minimum tax," 2023. 2. 2., https://www.oecd.org/tax/beps/international-tax-reform-oecd-releases-technical-guidance-for-implementation-of-the-global-minimum-tax.htm?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2022-02-23&utm_content=Read%20more&utm_term=ctp&utm_medium=email&utm_source=Adestra, 검색일자: 2023. 2. 16.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금리 추가 인상(2023. 2. 2.)¹⁾

- (배경) 2022년 7월 이후 5차례 정책금리 인상을 발표
- ECB 정책위원회는 2023년 2월 8일부터 3대 정책금리인 기준금리, 한계대출금리, 수신금리를 각각 3.0%, 3.25%, 2.5%로 모두 0.5%p씩 인상하기로 결정
- 정책금리를 중기 인플레이션 목표(2%)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3월에 개최 예정인 통화정책회의에서 0.5%p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
 - 2023년 1월 유로지역의 연간 물가상승률(HICP)²⁾은 8.5%로 전월(9.2%)보다 소폭 하락했으며, 근원 물가상승률³⁾은 전월과 동일한 5.2%로 집계
- 정책금리 조정 외에 자산매입프로그램(Asset purchase programme)⁴⁾의 규모는 2023년 3월부터 월평균 150억유로씩 점차 감축하여 양적

<표 1> EU 정책금리 인상 경로

(단위: %, %p)

구분	2022년					2023년
	6월	7월	9월	10월	12월	2월
기준금리	0.00	0.50	1.25	2.00	2.50	3.00
한계대출금리	0.25	0.75	1.50	2.25	2.75	3.25
수신금리	-0.50	0.00	0.75	1.50	2.00	2.50
변동폭	-	+0.5	+0.75	+0.75	+0.5	+0.5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2년 7월호; 9월호; 10월호; 12월호 내용을 표로 재구성

완화를 시행하고,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⁵⁾의 만기채권 원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재투자할 계획

■ EU 집행위, 2023년 겨울전망 발표(2023. 2. 13.)⁶⁾

※ EU에서는 연 4회 경제 전망(겨울 전망, 봄 전망, 여름 전망, 가을 전망)을 발표. 봄과 가을은 종합 전망으로 거시경제 전망치를 다루고 여름과 겨울은 중간 전망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수치를 업데이트함

- (경제) 유로지역과 EU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0.9%, 0.8%로 지난 가을전망(유로지역과 EU 모두 0.3%)보다 상향조정 되었으며, 2024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전망과 동일하게 유로지역과 EU 각각 1.5%, 1.6%를 유지
- 가스 공급원의 다변화와 소비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가스 저장고 수준이 높아지고 가스 도매가격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1)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3. 2. 2.,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3/html/ecb.mp230202~08a972ac76.en.html>, 검색일자: 2023. 2. 7.

2) HICP(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인플레이션과 물가안정을 나타내는 지표로 유로지역 HICP는 유로를 채택한 회원국들의 물가지수 가중 평균임

3) 에너지, 식품,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 인플레이션 기준

4) 금융시장에서 자산을 매입하여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양적완화 정책

5) 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me

6) EU 집행위, "Winter 2023 Economic Forecast: EU economy set to avoid recession, but headwinds persist," 2023. 2. 1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707, 검색일자: 2023. 2. 14.

노동시장 역시 2022년 12월 실업률이 6.1%로 사상 최저치를 유지하는 등 강세를 보임
 - 가계와 기업의 회복력에 힘입어 경제전망이 개선되었으나, 지속적인 물가상승 압력과 통화긴축은 가계구매력 약화와 투자 위축을 통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물가) 유로지역 물가상승률은 지난 가을전망보다 하향 조정되어 2023년 5.6%에서 2024년 2.5%로 하락할 전망이며, EU 물가상승률도 동기간 6.4%에서 2.8%로 하락 전망
- 유로지역 물가상승률은 2022년 10월 사상 최고치인 10.6%에 도달한 이후 에너지가격

<표 2>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경제전망

(단위: %)

국가	경제성장률				소비자 물가상승률			
	2023년 2월 겨울 전망		2022년 11월 가을 전망		2023년 2월 겨울 전망		2022년 11월 가을 전망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벨기에	0.8	1.6	0.2	1.5	4.3	2.7	6.2	3.3
독일	0.2	1.3	-0.6	1.4	6.3	2.4	7.5	2.9
에스토니아	0.1	2.8	0.7	2.1	6.2	2.2	6.6	2.6
아일랜드	4.9	4.1	3.2	3.1	4.4	2.1	6.0	2.8
그리스	1.2	2.2	1.0	2.0	4.5	2.4	6.0	2.4
스페인	1.4	2.0	1.0	2.0	4.4	2.3	4.8	2.3
프랑스	0.6	1.4	0.4	1.5	5.2	2.5	4.4	2.2
크로아티아	1.2	1.9	1.0	1.7	6.5	1.6	6.5	2.3
이탈리아	0.8	1.0	0.3	1.1	6.1	2.6	6.6	2.3
사이프러스	1.6	2.1	1.0	1.9	4.0	2.5	4.2	2.5
라트비아	0.1	2.7	-0.3	2.6	7.9	1.5	8.3	1.3
리투아니아	0.3	2.5	0.5	2.4	8.7	2.1	9.1	2.1
룩셈부르크	1.7	2.4	1.0	2.4	3.1	2.7	3.8	3.1
몰타	3.1	3.7	2.8	3.7	4.3	2.4	4.0	2.4
네덜란드	0.9	1.3	0.6	1.3	4.5	2.7	4.2	3.9
오스트리아	0.5	1.4	0.3	1.1	6.6	3.6	6.7	3.3
포르투갈	1.0	1.8	0.7	1.7	5.4	2.6	5.8	2.3
슬로베니아	1.0	2.0	0.8	1.7	6.1	3.5	6.5	3.5
슬로바키아	1.5	2.0	0.5	1.9	9.7	5.3	13.9	3.6
핀란드	0.2	1.4	0.2	1.4	4.2	2.0	4.3	1.9
유로지역 20개국	0.9	1.5	0.3	1.5	5.6	2.5	6.1	2.6
불가리아	1.4	2.5	1.1	2.4	7.8	4.0	7.4	3.2
체코	0.1	1.9	0.1	1.8	9.3	3.5	9.5	3.5
덴마크	0.1	1.6	0.0	1.8	4.4	2.5	3.7	2.0
헝가리	0.6	2.6	0.1	2.6	16.4	4.0	15.7	3.9
폴란드	0.4	2.5	0.7	2.6	11.7	4.4	13.8	4.9
루마니아	2.5	3.0	1.8	2.2	9.7	5.5	10.2	6.8
스웨덴	-0.8	1.2	-0.6	0.8	6.3	1.8	6.6	1.8
EU 27개국	0.8	1.6	0.3	1.6	6.4	2.8	7.0	3.0

출처: EU 집행위,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23, Statistical Annex, Table 1&3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하락이 반영되어 2023년 1월 8.5%로 점차 완화되었으나, 근원 물가상승률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음

- HICP 핵심 품목 중 90% 이상이 평균 이상의 가격 인상을 기록하면서 물가상승 압력 확대가 지속

● (위험) 전망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으나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은 대체로 균형

- 최근 도매 휘발유 가격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강하게 전이되어 내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으나, 지속적인 지정학적 긴장 상황으로 인한 역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중국의 재개방 이후 대외 수요가 강건해질 수 있으나 이는 세계 물가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음

- 물가상승 위험은 주로 에너지 시장 변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높은 임금상승률로 인해 예상보다 가격 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고 확고해질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 위험이 우세

■ EU-우크라이나 정상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 계획 등 논의(2023. 2. 3.)⁷⁾

● 지난 2월 3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와 우크라이나 간 최초의 정상회담 개최

● (주요 논의)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한 절차, 러시아에 대한 EU의 대응, 평화협상, 재건 및 구호 문제, 세계 식량안보 등의 의제를 논의함

- (EU 가입절차) 우크라이나가 반부패 사법개혁 등 유럽위원회가 명시한 조건⁸⁾ 충족 시 EU 회원국 신청을 위한 추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2023년 봄에 우크라이나의 조건 이행 상황을 보고할 예정

- (러시아 대응)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 기소를 위한 국제센터(ICPA)를 헤이그에 설치하고, 10차 추가 제재 채택을 추진할 계획

- (재정지원) 현재 EU 및 회원국 차원에서 약속된 재정 및 인도적 지원, 긴급 예산 등은 약 500억유로 규모로 추산되며, 400만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임시보호지침⁹⁾으로 보호받고 있음

- (세계 식량안보) 러시아가 전쟁에서 식량을 무기화함에 따라 식량 및 비료 가격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인상되고 농업생산, 공급망, 무역의 전 세계적 혼란이 촉발되었음을 상기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연대 협력의 필요성 강조

7) EU 정상회의, "EU-Ukraine summit," 2023. 2. 3.,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international-summit/2023/02/03/>, 검색일자: 2023. 2. 16.; EU 집행위, "Standing together with the people of Ukraine," 2023. 2. 2., https://eu-solidarity-ukraine.ec.europa.eu/eu-ukraine-standing-together_en, 검색일자: 2023. 2. 16.

8) 1993년 코펜하겐과 1995년 마드리드에서 유럽 이사회가 정한 경제적, 정치적 조건으로 회원국은 ① 민주주의, 법치, 인권, 소수자 존중 및 보호를 보장하는 제도의 안정성 달성, ② 시장경제 기능과 유럽연합 내에서 경쟁 압력 및 시장 세력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③ 정치적, 경제적, 통화적 연합 목표 준수를 포함하여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족되어야 함. 특히 시장경제의 발전, 행정구조의 조정 및 안정적인 경제 및 통화 환경 조성을 통해 점진적이고 조화로운 통합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출처: EU 집행위, "Commission Opinion on Ukraine's application for membership of the European Union," 2022. 6.,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system/files/2022-06/Ukraine%20Opinion%20and%20Annex.pdf>, 검색일자: 2023. 2. 16.

9) EU는 2022년 3월 4일부로 임시보호지침을 활성화하여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 EU 전역에 체류 자격을 부여



IMF

■ IMF, 식량 및 영양안보 위기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2023. 2. 8.)¹⁰⁾

- IMF 사무총장은 FAO(식량농업기구), WB(세계은행), WFP(세계식량계획), WTO(세계무역기구)와 함께 전 세계적인 식량 및 영양안보 위기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

- 2022-23년도 전 세계 식량 공급은 최근 3년 내 최저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비료경제성¹¹⁾ 역시 2007~08년 이후 최저치를 보이면서 식량 위기는 더욱 악화

- 식량 및 영양안보 위기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① 분쟁지역에서의 기아 구제, ② 무역 촉진 시장 기능 개선 및 민간 부문의 역할 강화, ③ 신중한 타겟팅과 효율성을 통한 유해 보조금 개편(repurpose) 및 개혁(reform)을 제시

- 국제기구들은 분쟁지역에서의 기아문제를 해결하고 정보공유 및 위기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노력을 지원

- IMF는 빈곤축소 및 성장신탁기금(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을 통해 저소득 국가에 양허성 금융을 제공하고, 식량위기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 아이티, 기니 등 심각한 식량 불안에 직면한 9개국

에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

- 국가는 공공재 공급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이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는 저소득 국가의 식품접근성 향상을 위해 수출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식량 및 비료 가용성 개선을 위한 무역을 원활화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의 무역 금융 이니셔티브를 지원해야 함
- 효율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행정적 문제를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개혁하고 형평성, 탄력성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 필요

■ IMF, “국제법인세 개혁의 미완성 과제(The Unfinished Business of International Business Tax Reform)” 게시(2023. 2. 16.)¹²⁾

- IMF는 블로그를 통해 회원국이 다국적기업에 대해 공정하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2021년 국제조세시스템 개편에 합의하였으며, 회원국의 신속한 이행이 필요

- 조세개혁은 2021년 OECD/G20 포괄적 프레임워크 회원국에 의해 합의되었으며, 이를 통해 과세기반 침식을 제한하고 투자처 이동으로 발생하는 이익감소를 줄일 수 있음

10) IMF, “Joint Statement by the Heads of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Bank Group, World Food Programme and World Trade Organization on the Global Food and Nutrition Security Crisis,” 2023. 2. 8.,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02/08/pr2335-joint-statement-by-the-fad-imf-wbg-wfp-and-wto-on-food-and-nutrition-security-crisis>, 검색일자: 2023. 2. 13.

11) 비료경제성은 비료 투입 가격에 대한 식량 산출의 비율

12) IMF BLOG, “The Unfinished Business of International Business Tax Reform,” 2023. 2. 16.,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3/02/16/the-unfinished-business-of-international-business-tax-reform>, 검색일자: 2023. 2. 21.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필라 1: 창고나 공장과 같은 물리적 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다국적기업의 이익에 대해 과세 가능
- 필라 2: 15%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지사가 있는 국가에서 최저세율 이하로 세금을 부과할 시,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추가로 세금 징수)
- 조세개혁의 초기 적용 범위는 가장 큰 다국적기업 약 100개 정도로 제한적이며, 개혁을 통한 추가 수익은 전 세계 GDP의 0.2% 미만으로 예상
- 국제조세개혁은 향후 추가 개혁의 가능성이 높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신속한 이행이 가장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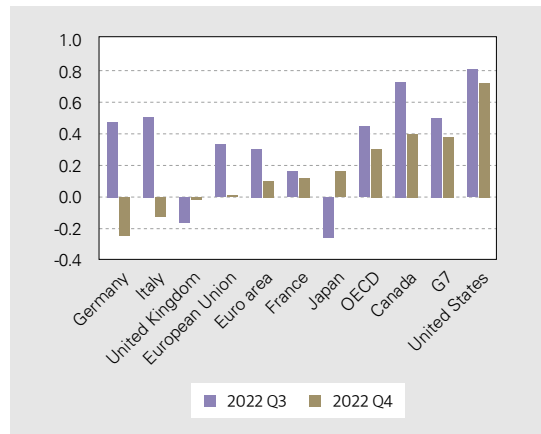
- 한국, 독일, 이탈리아의 성장률이 역성장으로 돌아섰고(각각 -0.4%, -0.2%, -0.1%), 캐나다 0.4%, 프랑스 0.1%, 미국 0.7%로 둔화됨
- 반면 일본은 2022년 3분기 -0.3%로 역성장했지만, 4분기에는 0.2% 성장했으며, 영국은 전분기 -0.2% 역성장한 데 이어 보험세를 보임
- 2022년 OECD 회원국의 연간 GDP 성장률은 2.9%로 팬데믹의 영향에서 경제가 회복 중이던 2021년(5.7%)에 비해서는 완만한 속도로 성장함
- G7 국가 중에서는 영국이 2022년에 가장 높은 연간 성장률(4.0%)을 기록했고, 이탈리아(3.8%)와 캐나다(3.6%)가 그 뒤를 이었으며, 일본이 가장 낮은 성장률(1.1%)을 기록



OECD

- OECD, 2022년 4분기 GDP 성장률 발표(2023. 2. 22.)¹³⁾
 - 2022년 4분기 OECD 회원국의 실질 GDP 성장률(잠정)은 0.3%로 여전히 부진
 - 높은 물가상승률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2022년 내내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은 약세를 보임
 - G7 국가의 실질 GDP 성장률도 2022년 4분기 0.4%를 기록하며 2022년 3분기의 0.5%에 비해 소폭 둔화

[그림 1] 실질 GDP 성장률(전기 대비, 계절조정)



주: 2022년 4분기 영국과 유럽연합 성장률은 0.0%
출처: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Database), 검색일자: 2023. 2. 22.

13) OECD, "GDP Growth - Fourth quarter of 2022," 2023. 2. 22., <https://www.oecd.org/newsroom/gdp-growth-fourth-quarter-2022-oecd.htm>, 검색일자: 2023. 2. 22.



미국

- 미국 경제분석국(BEA), 2022년 4분기 GDP(속보) 발표(2023. 1. 26.)¹⁴⁾
 - 2022년 4분기 실질성장률(전기 대비 연율 기준)은 2.9%를 기록하여 전분기(3.2%)에 비해 하락
 - 개인소비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며(2.3 → 2.1%), 성장기여도가 가장 큰 부문(1.42%p)으로 나타남
 - 재화소비 증가율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0.4 → 1.1%), 서비스 소비 증가율이 하락 (3.7 → 2.6%)
 - 민간투자 증가율은 4분기에 증가로 전환되었으나(-9.6 → 1.4%), 고정투자 감소세는 더욱 확대(-3.5 → -6.7%)
 - 수출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14.6 → -1.3%) 수입의 감소세가 약화되어(-7.3 → -4.6%)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대폭 하락(2.86 → 0.56%p)
 - 정부지출 중 연방지출의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상승하였으며(3.7 → 6.2%), 주 및 지방정부 지출의 증가율은 하락(3.7 → 2.3%)하여 정부지출 증가율은 보합세(3.7 → 3.7%)
- 미국 백악관, 보건 관련 장소에서의 백신 의무화 철폐 법안(H.R. 497; Freedom for Health Care Workers Act)에 대한 반대 의견서 발표(2023. 1. 30.)¹⁵⁾
 - (배경)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어 관련 보건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2021년 11월 5일 개시)을 폐지하는 법안 하원 통과
 - (정부 입장) 백악관은 행정정책성명서를 통해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발표
- 미국 의회 하원, 팬데믹 종료 법안(H.R. 382; Pandemic is Over Act) 가결(2023. 1. 31.)¹⁶⁾
 - (배경) 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0년 1월 31일에 선포하였던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PHE)를 종결(법안 통과 즉시 종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상원으로 이송 완료¹⁷⁾
 - (진행 상황) 바이든 정부는 행정정책성명서(Statement of Administration Policy: SAP)를 통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까지 준비기간을 두어 5월 11일에 종료할 것으로 발표

14)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Gross Domestic Product, Fourth Quarter and Year 2022(Advance Estimate)," 2023. 1. 26., <https://www.bea.gov/news/2023/gross-domestic-product-fourth-quarter-and-year-2022-advance-estimate>, 검색일자: 2023. 2. 15.

15) OMB, "Statement of Administration Policy," 2023. 1. 30.,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3/01/SAP-H.R.-497.pdf>, 검색일자: 2023. 2. 16.

16) OMB, "Statement of Administration Policy," 2023. 1. 30.,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3/01/SAP-H.R.-382-H.J.-Res.-7.pdf>, 검색일자: 2023. 2. 16.

17)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Declarations of a Public health Emergency," <https://aspr.hhs.gov/legal/PHE/Pages/default.aspx>, 검색일자: 2023. 2. 21.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표 3> 미국의 2022년 12월 물가상승률(PCE 물가)

(단위: %)

구분	2022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PCE 물가	6.3	6.3	6.1	5.5	5.0
재화	8.6	8.1	7.2	6.1	4.6
- 휘발유	27.6	20.2	20.1	13.4	1.4
- 자동차·부품	9.6	9.1	6.6	4.0	1.0
서비스	5.1	5.4	5.5	5.2	5.2
- 외식·숙박	7.2	7.1	7.7	7.2	6.9
- 주거서비스	7.6	7.9	7.8	7.9	8.4
- 운송서비스	11.2	16.4	16.6	12.0	13.2
PCE 물가, 식품 및 에너지 제외	4.9	5.2	5.1	4.7	4.4

주: 물가상승률은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개인소비지출) 지표를 사용하여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 계산

출처: 1.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Personal Income and Outlays, December 2022," 2023. 1. 27., <https://www.bea.gov/news/2023/personal-income-and-outlays-december-2022>, 검색일자: 2023. 2. 20.
2. 한국은행,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 2023. 2., p. 4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0.25%p 인상(2023. 2. 1.)¹⁸⁾

- 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를 4.25~4.5% → 4.5~4.75%로 0.25%p 인상
- 파월 의장은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¹⁹⁾ 향후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국가채무 한도 도달 시 연준의 역할에 대해 연준은 재무부의 재정적 대리인(fiscal agent)임을 강조
- 현재까지 정책기조는 충분히 제한적이지(restrictive) 않으며, 적절히 제한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몇 차례 더 금리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

■ 미국 노동통계국(BLS), 2023년 1월 고용통계 발

<표 4> 미국의 2023년 1월 고용통계

(단위: 천명, %, %p)

구분	2022년 1월	2022년 11월	2022년 12월	2023년 1월	전년 동기 대비 변화
생산가능인구 ¹⁾	263,202	264,708	264,844	265,962	2,760
경제활동인구	163,633	164,527	164,966	165,832	2,199
- 경제활동참가율	62.2	62.2	62.3	62.4	0.2
취업자 수	157,122	158,527	159,244	160,138	3,016
- 인구 대비 취업률 ²⁾	59.7	59.9	60.1	60.2	0.5
실업자 수	6,511	6,000	5,722	5,694	-817
- 실업률	4.0	3.6	3.5	3.4	-0.6

주: 월별 실업률은 계절조정된 수치로 가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1) 생산가능인구는 비기관인구(civilian noninstitutional population)로, 기관(감옥, 노인보호소 등)에서 생활하지 않고 군 복무 중인 사람을 제외한 16살 이상의 사람 지칭

2) 인구 대비 취업률(employment-population ratio)은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의미

출처: 미국 노동통계국, "News Release Employment Situation - January 2023," 2023. 2. 3., p. 7, Summary table A

18)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Jan/Feb 2023 FOMC Meeting Statement Press Release," 2023. 2. 1.,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monetary20230201a1.pdf>, 검색일자: 2023. 2. 17.

19) 미국 연방준비제도, "Transcript of Chair Powell's Press Conference February 1, 2023," <https://www.federalreserve.gov/mediacenter/files/FOMCpresconf20230201.pdf>, 검색일자: 2023. 2. 17.

표(2023. 2. 3.)²⁰⁾

- 2023년 1월 미국의 실업률은 3.4%로 54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으며,²¹⁾ 경제활동참가율은 62.4%로 나타남

■ 의회예산처(CBO), 2023~2033 예산·경제전망(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3 to 2033) 보고서²²⁾ 발표(2023. 2. 15.)²³⁾

- (재정수지) 2023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2.5%(350억달러) 증가한 약 1.4조달러(GDP 대비 5.4%) 전망²⁴⁾
- (수입) 2023회계연도 연방수입은 전년 대비 1.7%(840억달러) 감소한 4.8조달러(GDP 대비 18.3%) 전망²⁵⁾

- (지출) 2023회계연도 연방지출은 전년 대비 0.8%(510억달러) 감소한 6.2조달러 전망(GDP 대비 23.7%)²⁶⁾
- (채무) GDP 대비 연방정부 채무²⁷⁾ 수치는 2020년에 100% 도달 이후 2021년부터 소폭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2023년) 반등 전망
- (경제) 2023년 실질성장률은 2022년 2.1%에서 1.8%p 하락한 0.3%로 경기 정체(stagnate)와 함께 실업률 증가 및 물가상승률 하락 전망
 - (물가) 2022년 물가상승률(CPI)은 8.0%를 기록하였으며, 2023년과 2024년에도 연준의 장기적 목표(2%)를 상회하다가 2026년에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 (노동시장) 2023년의 고용시장은 실질 생산

<표 5>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십억달러, %)

재정	2022	2023	2024	2025	2026~2027	2028~2033
	실적	전망				
GDP(명목)	25,016	26,238	27,266	28,610	-	-
실질성장률 ¹⁾	2.1	0.3	1.8	2.7	2.4	1.8
도시소비자물가지수(CPI-U) ¹⁾	8.0	4.8	3.0	2.2	2.1	2.3
실업률 ²⁾	3.6	4.7	4.9	4.7	4.5	4.5

주: 1) 전년 대비 증가율

2) 연평균

출처: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3 to 2033," 2023. 2. 15., p. 35, Table 1-1, Table 2-1

20)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News Release Employment Situation - January 2023," 2023. 2. 3., <https://www.bls.gov/news.release/pdf/empisit.pdf>, 검색일자: 2023. 2. 20.

21) 미국 백악관, "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the January Jobs Report," 2023. 2. 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3/02/03/remarks-by-president-biden-on-the-january-jobs-report-2/>, 검색일자: 2023. 2. 20.

22) CBO의 예산기준선 전망 보고서는 1974년에 제정된 의회예산법(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 / P.L. 93-344)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의 예산 전망은 2023. 1. 9.까지 입법된 정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경제전망은 2022. 12. 6.까지를 기준으로 작성

23)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3 to 2033," 2023. 2. 15., <https://www.cbo.gov/publication/58848>, 검색일자: 2023. 2. 17.

24) 향후 10년(2024~2033년)간 GDP 대비 연평균 누적 재정적자는 6.1% 전망(지난 50년간 연평균은 3.6%)

25) 향후 10년간 GDP 대비 비중 수입 연평균은 약 18.0% 전망(지난 50년간 연평균은 17.4%)

26) 향후 10년간 GDP 대비 비중 지출 연평균은 약 24.1% 전망(지난 50년간 연평균은 21.0%)

27) 정부 내부거래(debt held by government accounts) 제외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량의 둔화가 노동 수요의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고용인구(payload employment) 정체 및 실업률의 증가로 악화 전망

- (이자율) 정책금리(현재* 4.50~4.75%)는 2022년 4분기 3.6%에서 2023년 말에 5.1%로 상승하며 동년 3분기까지 유지될 전망

* CBO 보고서상의 현 기준금리는 2023년 2월 1일에 개최된 FOMC에서 결정된 정책금리 목표범위(4.25~4.50% → 4.50~4.75%)가 미반영된 수치

에 음(-)의 기여도를 나타냈으며, 재화·서비스 순수출(외수) 기여도는 0.3%로 2분기 만에 양(+)의 기여도로 전환

- (민간수요) 민간수요는 전 분기 대비 0.4% 감소하여 6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
- (공적수요) 공적수요는 전 분기 대비 0.3% 증가하여 3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
- (수출입) 재화·서비스 수출은 여행(방일외국인의 국내소비 등) 증가 등에 기인하여 전 분기 대비 14% 증가, 재화·서비스 수입은 광고 서비스 감소 등에 기인하여 전 분기 대비 0.4% 감소

- (연간) 2022년 실질 GDP 성장률은 1.1%, 명목 GDP 성장률은 1.3%로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2021년 실질 GDP 성장률 2.1%, 명목 GDP 성장률 1.9%)

-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내외수요 기여도는 내수 1.7%, 외수 -0.6%를 나타냈으며, 명목 GDP 성장률에 대한 내외수요 기여도는 내수 4.7%, 외수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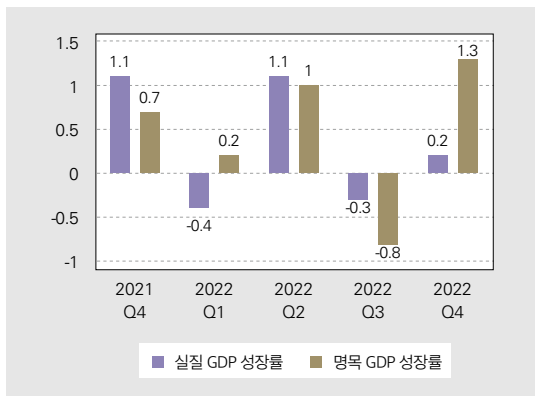
일본

■ 일본 내각부, 2022년 4분기 GDP 1차 속보치 발표(2023. 2. 14.)

- (4분기) 2022년 3분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은 0.2%(연율 0.6%), 명목 GDP 성장률은 1.3%(연율 5.2%)로 집계
- (내외수요 기여도)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수요(내수) 기여도는 -0.2%로 5분기 만

[그림 2]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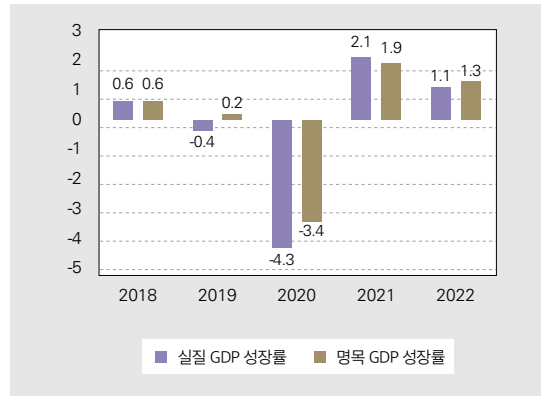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5年1月24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p. 1 표 재구성

[그림 3] 일본의 연도별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5年1月24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p. 7 표 재구성

<표 6> 국민부담률 국제비교

(단위: %)

구분	일본		미국 2020	영국 2020	독일 2020	스웨덴 2020	프랑스 2020
	2023	2020					
사회보장부담률	18.7	19.8	8.5	11.7	23.7	5.1	24.9
조세부담률	28.1	28.2	23.8	34.3	30.3	49.5	45.0
국민소득 대비 재정적자	7.1	15.0	18.5	17.4	5.7	4.1	13.2
국민부담률	46.8	47.9	32.3	46.0	54.0	54.5	69.9
(GDP 대비)	(34.5)	(33.5)	(26.1)	(34.7)	(40.7)	(36.7)	(47.7)
잠재 국민부담률	53.9	62.9	50.8	63.4	59.7	58.6	83.0
(GDP 대비)	(39.7)	(43.9)	(41.1)	(47.8)	(66.4)	(39.5)	(56.7)

주: 1. 일본(2023년)은 전망치, 일본(2020년)은 실적치, 그 외 국가들은 2020년 잠정치

2. 재정수지는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기준. 단 일본은 사회보장기금, 미국은 사회보장연금신탁기금을 제외

출처: 일본 재무성, 「国民負担率の国際比較」, 2023. 2. 21., <https://www.mof.go.jp/policy/budget/topics/futanritsu/sy202302b.pdf>, 검색일자: 2023. 2. 21.

-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은 0.2%로 전년 대비 0.4%p 증가

비)은 2020년 기준 일본은 47.9%, 미국은 32.3%, 영국은 46.0%이며, 독일은 54.0%, 스웨덴은 54.5%, 프랑스는 69.9%로 나타남³⁰⁾

■ 일본 재무성, 2023년 국민부담률 전망 발표 (2023. 2. 21.)²⁸⁾

- 2023년 국민부담률(국민소득 대비)은 2022년 47.5%(실적 전망치)보다 0.7%p 감소한 46.8%로 전망
- 국민부담률에 재정적자²⁹⁾를 고려한 ‘잠재 국민부담률’은 2022년 61.1%(실적 전망치)보다 7.2%p 감소한 53.9%로 전망
- 다른 국가와 비교한 국민부담률(국민소득 대



독일

■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2023년 연간경제보고서 (Jahreswirtschaftsbericht 2023)’³¹⁾ 발표(2023. 1. 25.)³²⁾

- (경제전망)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0.2%, 2024년 1.8%로 전망

28)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の国民負担率を公表します」, 2023. 2. 21.; <https://www.mof.go.jp/policy/budget/topics/futanritsu/20230221.html>, 검색일자: 2023. 2. 21.

29) 재정적자는 국가 및 지방의 재정수지 적자로 일시적인 특수요인을 제외한 수치, 출처: 일본 재무성, 「国民負担率(対国民所得比)の推移」, 2023. 2. 21., <https://www.mof.go.jp/policy/budget/topics/futanritsu/sy202302a.pdf>, 검색일자: 2023. 2. 21.

30) 한국의 조세부담률(GDP 대비)은 2020년 20.0%, 2021년 22.1%이며, 국민부담률(GDP 대비)은 2020년 27.7%, 29.9%. 출처: e-나라지표,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2, 검색일자: 2022. 2. 21.

31) 연간경제보고서는 매년 1월에 발표되며 독일 연방정부의 경제 및 재정정책 우선순위와 경제전망을 제시함

32) 독일 연방내각, “Robust durch die Krise – Wohlstand erneuern,” 2023. 1. 25.,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jahreswirtschaftsbericht-2023-2160264>, 검색일자: 2023. 2. 6.;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Jahreswirtschaftsbericht 2023 – Wohlstand erneuern,” Press Release, 2023. 1. 25.,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3/01/20230125-jahreswirtschaftsbericht-2023-wohlstand-erneuern.html>, 검색일자: 2023. 2. 6.

<표 7> 2023년 독일 경제전망

(단위: 전년 대비 % 변화)

구분	2022	2023	2024
GDP(가격조정)	1.9	0.2	1.8
취업자 수	1.3	0.3	0.2
실업률	5.3	5.4	5.2
소비자물가지수	7.9	6.0	2.8

출처: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Jahreswirtschaftsbericht 2023 - Wohlstand erneuern," Press Release, 2023. 1. 25.,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3/01/20230125-jahreswirtschaftsbericht-2023-wohlstand-erneuern.html>, 검색일자: 2023. 2. 6.

- (GDP) 이번 보고서의 2023년 GDP 성장을 전망치는 0.2%로 지난해 가을의 전망치 (-0.4%) 대비 상향 조정되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세계경제의 성장 약세, 높은 에너지가격과 물가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
- (물가)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2년 7.9% 기록 후 2023년에는 6.0%로 다소 하락할 전망
- (고용) 2023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늘어난 약 4,570만명, 실업률은 전년 대비 약간 상승한 5.4%로 전망
- (재정전망) 상당한 규모의 투자와 위기 대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023년부터는 연방예산의 부채규정 기준 한도³³⁾를 다시 준수할 예정
- 2023년 연방예산의 신규 차입 규모는 456억 유로로 전년(1,154억유로) 대비 축소될 전망
- 2023년 연방예산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를 제공(기후보호, 인

프라 현대화, 교육 개선 등)

- (주요 정책) 독일 연방정부는 연간경제보고서에서 2023년 주요 경제·재정정책 이슈를 제시
 - (에너지 공급 보장 및 전환 가속화) 에너지 공급 문제와 에너지가격 급등에 대응한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신재생 에너지 확대, 녹색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 등)
 - (혁신적 공급 정책 수립) 투자 유치와 산업·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적 공급 정책에 초점을 두고 세계 개혁을 통한 민간 투자 촉진, 산업용 전기요금 정비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불필요한 관료주의 철폐, 숙련 근로자 유치·육성 등 추진
 - (전략적 자주권 강화, 무역 정책 재정비 등) 양자간 EU 무역 협정의 신속한 비준 및 추가 협상 추진, 원자재 공급원 다양화, 유럽 내부 시장 강화, 기술·디지털·에너지 정책의 자주권 강화 등
 - (사회적 결속 강화) 저소득층의 구매력 보장, 보육 및 교육의 질 개선과 아동·가족 정책 강화, 사회·생태적 주택 건설 촉진 및 기후친화적 임대 주택 지원, 현안 과제와 연계된 지역 발전 정책 등
 - 이외에도 공공 투자를 통한 현대화 및 재정 안정성 보장, 기후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및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 개발 등을 추진

■ 독일 연방통계청, 2022년 4분기 GDP 성장률 발

33) 연방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GDP의 0.35%로 제한

<표 8> 독일의 분기별 GDP 성장률

(단위: 십억유로, %, 지수)

구분	원계열				가격 조정(X-13 활용)			
	경상가격 기준		가격 조정, 연쇄가격 기준		계절변동 및 달력효과 조정		달력효과 조정	
	10억유로	% ¹⁾	2015=100	% ¹⁾	2015=100	% ²⁾	% ^{1), 3)}	
2021(연간)	3,601.75	5.8	105.87	2.6	105.61	2.6	2.6	
2022(연간)	3,867.05	7.4	107.81	1.8	107.62	1.9	1.9	
2021	1분기	862.03	-0.6	103.29	-2.3	103.70	-1.5	-2.1
	2분기	878.06	11.5	104.65	10.6	105.70	1.9	10.1
	3분기	915.99	6.3	107.31	1.8	106.53	0.8	1.9
	4분기	945.67	6.3	108.24	1.2	106.50	0.0	1.2
2022	1분기	938.99	8.9	107.28	3.9	107.35	0.8	3.6
	2분기	948.58	8.0	106.46	1.7	107.46	0.1	1.6
	3분기	972.17	6.1	108.68	1.3	107.97	0.5	1.4
	4분기	1,007.31	6.5	108.82	0.5	107.71	-0.2	1.1

주: 1) 전년도 또는 전년 동 분기 대비 변화

2) 전년도 또는 직전 분기 대비 변화

3) 연도별 GDP 성장률은 달력효과 조정값과 계절변동 및 달력효과 조정값이 동일(반올림으로 인한 차이 제외)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Gross domestic product in the 4th quarter of 2022 down 0.2% on the previous quarter," 2023. 1. 31., https://www.destatis.de/EN/Press/2023/01/PE23_037_811.html, 검색일자: 2023. 2. 6.표(2023. 1. 31.)³⁴⁾

- 2022년 4분기 독일의 GDP(가격, 계절변동 및 달력효과 조정)는 전 분기 대비 0.2%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2022년 4분기의 가격조정 GDP 성장률은 0.5%, 가격 및 달력효과 조정³⁵⁾ 성장률은 1.1%를 기록

2. 7.)³⁶⁾

- (재정수지) 2022년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1,515억 유로로 2021년 1,707억유로 대비 192억유로 감소
- (재정지출) 2022년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은 4,457억유로로 2021년 4,267억유로 대비 190억유로 증가
- (재정수입) 2022년 일반예산수입(recettes du budget général)은 3,472억유로로 2021년 3,170억유로에 비해 302억유로 증가



프랑스

[예산·결산 등]

■ 프랑스 예산국, 2022년 예산집행결과 발표(2023.

[기타]

■ 프랑스 통계청, 2022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

34) 독일 연방통계청, "Gross domestic product in the 4th quarter of 2022 down 0.2% on the previous quarter," Press Release, 2023. 1. 31., https://www.destatis.de/EN/Press/2023/01/PE23_037_811.html, 검색일자: 2023. 2. 6.

35) 해당 자료는 계절조정을 계절변동(달력효과 미반영) 조정과 달력효과(공휴일, 조업일수 변화 등을 반영) 조정으로 구분

36)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État au 31 décembre 2022," 2023. 2. 7., <https://www.budget.gouv.fr/documentation/file-download/19403>, 검색일자: 2023. 2. 16.

<표 9> 프랑스의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¹⁾
(단위: 전 분기 대비 %)

구분	2022 Q1	2022 Q2	2022 Q3	2022 Q4	2021	2022	
실질 GDP 성장률	-0.2	0.5	0.2	0.1	6.8	2.6	
가계 소비	-1.0	0.5	0.5	-0.9	5.2	2.7	
정부 소비	0.2	0.0	0.2	0.2	6.4	2.4	
총고정자본형성 ²⁾	0.4	0.3	2.3	0.8	11.4	2.4	
수출	1.7	1.0	0.8	-0.3	8.6	6.8	
수입	1.3	1.5	3.9	-1.9	7.8	8.6	
GDP 기여도	국내수요 ³⁾	-0.4	0.3	0.9	-0.2	7.0	2.7
	재고투자	0.1	0.3	0.3	-0.2	-0.3	0.5
	대외무역	0.1	-0.2	-1.0	0.5	0.1	-0.7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2)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GFCF)
3) 재고투자 제외

출처: 프랑스 통계청, "GDP slowed down in Q4 2022(+0.1% after +0.2%). On average in 2022, it increased by 2.6%," 2023. 1. 21.

발표(2023. 1. 31.)³⁷⁾

- 2022년 4분기 프랑스의 실질 GDP 성장률은 3분기 0.2% 대비 다소 둔화된 0.1%
- 가계소비가 2022년 3분기 0.5%에서 4분기 -0.9%로 급격히 감소했고, 실질 GDP 성장에 대한 국내수요의 기여도는 -0.2%p로 나타남
- 총고정자본형성은 3분기 2.3%에서 4분기 0.8%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
- 수입(3분기 3.9% → 4분기 -1.9%)이 수출(3분기 0.8% → 4분기 -0.3%)보다 더 크게 감소하여 대외무역의 실질 GDP 성장에 대

한 기여도는 0.5%p로 지난 분기 -1.0%p보다 상승

■ 프랑스 통계청, 2022년 4분기 실업률 발표(2023. 2. 14.)³⁸⁾

- 2022년 4분기 프랑스 실업률은 7.2%로 전 분기 대비 0.1%p, 전년 동기 대비 0.3%p 하락함
- 2022년 4분기 실업률은 위기 이전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해 1.0%p 감소한 수치로 2008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15~24세 실업률은 16.9%로 전 분기 대비

<표 10> 프랑스의 분기별 실업률
(단위: %, %p, 천명)

구분	2022년 3분기	2022년 4분기	증감률		2022년 4분기 실업자 수
			전 분기 대비	전년 대비	
실업률 전체	7.3	7.2	-0.1	-0.3	-1.0
15~24세	17.9	16.9	-1.0	0.4	-4.9
25~49세	6.5	6.5	0.0	-0.3	-0.8
50세 이상	5.1	5.0	-0.1	-0.7	-0.8
남자	7.5	7.4	-0.1	-0.2	-0.9
15~24세	19.5	18.6	-0.9	1.3	-2.0
25~49세	6.5	6.5	0.0	-0.2	-0.9
50세 이상	5.0	4.8	-0.2	-1.1	-1.2
여자	7.1	6.9	-0.2	-0.4	-1.2
15~24세	16.1	14.8	-1.3	-0.7	-8.4
25~49세	6.4	6.5	0.1	-0.4	-0.6
50세 이상	5.3	5.2	-0.1	-0.2	-0.4
장기실업률	1.9	1.9	0.0	-0.3	-0.3
고용률	68.3	68.3	0.0	0.5	-

출처: 프랑스 통계청, "In Q4 2022, the unemployment rate was virtually stable at 7.2%," 2023. 2. 14.

37) 프랑스 통계청, "GDP slowed down in Q4 2022(+0.1% after +0.2%). On average in 2022, it increased by 2.6%," 2023. 1. 21.,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6795633>, 검색일자: 2023. 2. 15.

38) 프랑스 통계청, "In Q4 2022, the unemployment rate was virtually stable at 7.2%," 2023. 2. 14.,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6800807>, 검색일자: 2022. 2. 15.

- 1.0%p 하락
- 25~49세 실업률은 6.5%, 50세 이상 실업률은 5.0%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고용률은 전 분기와 동일한 68.3%



영국

■ 영국 예산책임청(OBR), 경제·재정전망 평가 보고서(Forecast evaluation report - January 2023) 발표(2023. 1. 31.)³⁹⁾

- (배경) 예산책임청은 매년 경제·재정전망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예산책임청이 수행한 경제·재정전망과 실적치를 비교·분석
 - 이번 보고서는 2021년 3월 수행한 2021-22 회계연도(2021. 4. ~ 2022. 3.) 경제·재정전망과 실적치에 초점을 두고 분석
- 경제전망 평가
 - (물가상승률) 2021-22회계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의 경우, 2010년에 예산책임청이 경제·재정전망을 시작한 이래 전망치와 실적치 간 가장 큰 오차 발생
 - 2021-22회계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1년 3월 전망치(1.7%)의 두 배가 넘는 4.0%를 기록하여 2.3%p의 오차 발생
 - 큰 폭의 오차는 예상치 못한 선진국의 강한 수요 회복, 신흥국의 공급·물류의 병목 현상 지속, 에너지 집약적 제품에 대한

수요 급증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 팬데믹 여파로 인해 예상보다 더 경직적이었던 노동시장 등에 기인

- (실질 GDP) 예상보다 높은 물가상승률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실질 GDP 수준은 2022년 1분기까지 2021년 3월 전망과 대체로 일치하지만, 2021-22회계연도 실질 GDP 성장률을 3.2%p 과소 예측

- 이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경제 반등이 강하지 않았으나, 이후 공중보건 제한이 해제되면서 더 강하게 반등했음을 시사
- 전망 오차 3.2%p를 분해해 보면, 강력한 소비성장이 2.7%p, 기업투자가 -0.1%p, 민간 주택투자가 0.5%p, 정부지출이 -0.5%p, 순수출이 1.3%p, 기타 요인이 -0.8%p를 설명
- 재정전망 평가
 - (순차입) 2021-22회계연도 순차입은 실적치 대비 1,086억파운드(46.4%) 과대 전망되었는데, 오차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1년 3월 전망 이후 정책 변화로 인해 순차입 38억파운드 과대 전망
 - 경제적 요인(경제전망)으로 인해 수입 357억 파운드 과소 전망(특히 노동소득과 개인 소비)
 - 경제적 요인 이외 요인(분류 체계 변화 등)

39) 영국 예산책임청, "Forecast evaluation report - January 2023," 2023. 1. 31., <https://obr.uk/fer/forecast-evaluation-report-january-2023/>, 검색일자: 2023. 2. 13.

으로 인해 수입 606억파운드 과소 전망

- 채무이자 지출의 과소 예측(316억파운드) 과 기타 지출의 과대 예측(401억파운드) 이 상쇄되어 순차입 85억파운드 과대 전망
- (순채무) 2021-22회계연도 공공부문 순채무는 GDP 대비 10%p 과대 전망
- 전망 오차를 살펴보면, GDP 대비 1.5%p는 채무 초기값을 과대 예측한 데 기인하고, 3.7%p는 예상보다 낮은 채무 축적, 나머지는 예상보다 높았던 GDP가 원인

■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MPC⁴⁰), 2023년 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3.5 → 4%) 결정 (2023. 2. 2.)⁴¹

- 경제현황 논의
 - (국제경제) 유로지역의 성장 약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2022년 4분기 세계 경제성장률은 둔화 예상
 - 세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선진국에서는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에너지가격 하락과 국제수요 약화 등에 따라 2023년 하락할 것으로 예측
- (통화·금융) 여러 중앙은행들이 긴축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시장가격은 정책금리가 단기적으로 더 인상될 가능성이 있음

을 시사

- (수요·생산량) 경제성장률은 2022년 3분기 -0.3%를 기록하였고, 4분기는 0.1%, 2023년 1분기 -0.1%로 추정
- (금리 인상 결정) 영국 통화정책위원회는 2023년 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에서 4%로, 0.5%p 인상하기로 결정
- 기준금리 투표에서 9명의 위원 중 7명은 4.0%, 2명은 3.5% 의견 제시

■ 영국 감사원(NAO), 에너지요금 지원 관련 보고서 발표(2023. 2. 7.)⁴²

- (지원 정책) 에너지요금 증가로 인한 영향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가격 보증제(EPG), 에너지비용 구제 계획(EBRS), 대체연료 보조금(AFP), 비가정용 대체연료 보조금(ND AFP), 에너지요금 지원제도(EBSS) 등을 시행
- (지원 비용·편익) 2022-23회계연도 동결기부터 시행한 에너지요금 지원 비용은 현재 690억 파운드로 추정
 -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정도로 사용량을 줄이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요금 증가가 소비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여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등의 편익이 발생되나 정확한 추정은 어려움

40) Monetary Policy Committee

41) Bank of England, "Bank Rate increased to 4% - February 2023," 2023. 2. 2., <https://www.bankofengland.co.uk/monetary-policy-summary-and-minutes/2023/february-2023>, 검색일자: 2023. 2. 7.

42) National audit Office, "Energy bills support," 2023. 2. 7., <https://www.nao.org.uk/press-releases/energy-bills-support-schemes/>, 검색일자: 2023. 2. 15.

<표 11> 영국의 기준금리 추이

(단위: %)

일시	'21. 12. 16.	'22. 2. 3.	'22. 3. 17.	'22. 5. 5.	'22. 6. 16.	'22. 8. 4.	'22. 9. 22.	'22. 11. 3.	'22. 12. 15.	'23. 2. 2.
금리	0.25	0.50	0.75	1.00	1.25	1.75	2.25	3.00	3.50	4.00

출처: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Committee Voting History," 2023. 2. 2.

- (정책 시행·관리)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⁴³⁾는 이번 겨울 대부분의 가정과 기업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시스템을 준비하고 정책을 시행
 - 정책의 신속한 시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가정과 기업에게 보편적 지원(universal support)이 제공되었으나, 이는 지원이 꼭 필요하지 않은 가정과 기업에게도 지원을 제공하여 금전적 위험을 유발
- (결론) 에너지요금 지원 정책을 신속하게 도입하여 시행한 점은 인정할 만하지만, 정부는 향후 선별적 지원(targeting support)을 고려하고 있음
 - 선별적 지원 시, 차등 지원 자격을 결정하고 부정수급 시도를 식별하는 등 재무 통제 접근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운영하고, 오지급 등의 잠재적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3) 리시 수낙 총리는 지난 2월 7일 조직 개편을 통해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Industrial Strategy)를 해체하고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와 과학·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를 신설. 따라서 현재 에너지요금 지원 정책은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가 주관

재정포럼

2023년 3월호 통권 제321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원중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집위원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편집간사 장정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편집·제작 이현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월간 재정포럼

2023년 3월 15일 발행 / 통권 제321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2 / **E-mail:** pub@kipf.re.kr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디자인·인쇄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만나는
내 손안의 재정포럼